캘리포니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

2010년 6월 8일 화요일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정확성 증명서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인 본인 Debra Bowen은 이 안내서에 포함된 법안들이 2010년 6월 8일에 실시될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출되고, 이 안내서가 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0년 3월 18일에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의 대문장을 날인합니다.

Debra Bowen
총무처장관

총무처장관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은 유권자 등록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총무처장관실은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이 안내서에는 Edmund G. Brown Jr.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안 명칭과 요약, 법률 분석가인 Mac Taylor가 작성한 법률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납세자에 대한 잠재적 비용,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작성한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법제 전문가인 Diane F. Boyer-Vine이 작성한 발의 법안 전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 인쇄국장 대리인 Kevin P. Hannah의 감수를 받아 인쇄되었습니다.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을 통해서, 또는 해당 지역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하는 마감일은 6월 1일입니다.

예비선거는 각 정당의 어느 지명자가 총선거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각 정당의 입후보자(또는 초당파적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한 상위 2인)는 2010년 11월 2일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일부 정당은 정당 표시를 거부한 유권자(또한 초당파적 또는 정당 미가입 유권자라고도 함)가 그 정당의 투표용지를 신청 및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안내서의 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 선거일에 선거 관리인이 되어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선거관리 담당관이 집계를 완료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화, 브로셔, 포스터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투표권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토의 그룹을 조직하거나 친구, 가족,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입후보자와 쟁점에 대해 다른 유권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과 투표 장소, 그리고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66) 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선택권과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든 또는 우편투표를 하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정보 안내서에 들어있는 투표에 대한 권리와 각 법안을 주의해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목차

페이지

간편 참조 안내서 7

발의안

13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10**
14 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할 권리 증진. **14**
15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 **20**
16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26**
17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32**

정당 취지문 36

주 전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 리스트 40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42

법안 전문 62

유권자의 권리 79

정보 페이지

예비선거와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 4
유권자 등록 4
주의회 및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5
투표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한 설명 5
투표 법안 소개 5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6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기 6
투표소 위치 확인 9
주 전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설명 38
조세형평국 선거구 지도 39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60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 주 전체 법안에 대한 정보를 보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campaign/*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ppl.htm*
- 우편투표용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_m.htm*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에 선거 결과를 생중계로 보십시오: *http://vote.sos.ca.gov/*

이번 예비선거와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에 관한 중요 정보

"정당 표시 거부(decline-to-state)"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정당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등록 유권자를 말합니다(또한 무소속 또는 DTS 유권자라고도 합니다).

예비선거는 각 정당의 어느 지명자가 **총선거**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각 정당의 입후보자는 2010년 11월 2일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 특정한 정당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이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투표 법안과 여러분이 등록한 정당의 공직 입후보자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을 때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정당 표시를 거부한 등록 유권자가 그 정당의 입후보자 지명을 돕는 것을 허용한다고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한 정당의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정당의 투표용지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정당들은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들이 2010년 6월 8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투표(카운티 중앙위원회 입후보자는 제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민주당
  - 공화당

  유권자가 특정한 투표용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 법안과 무소속 공직 입후보자의 이름만이 들어있는 무소속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 .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관은 영구 우편투표 유권자로 등록한 모든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에게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서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한 정당이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에게 그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유권자가 그 정당의 예비선거에 대한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알려줍니다. 무소속 투표용지를 이미 발급 받았으나 투표를 허용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의 리스트는 이 안내서 6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은 간단하고 무료입니다. 등록 양식은 *www.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정부 사무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실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여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겸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 아니어야 하며,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유권자가 집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편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 2010년 5월 24일 이후에 새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회 및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주 전체 투표 법안과 일부 주 전체 공직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주 상원 및 하원 공직은 단 한 개 또는 몇 개 카운티의 유권자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입후보자의 정견발표문은 해당 카운티의 견본 투표용지 책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2000년 11월에 승인한 발의안 제34호는 주의회 공직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지정된 달러 금액 이하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주의회 입후보자들은 이 안내서의 지면을 구입하여 250 단어의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한 의회 입후보자들의 리스트를 보시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_stat.htm*을 방문하십시오.

선거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주 상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777,000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주 하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518,00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는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책자의 지면을 구입하여 250 단어의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지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한 설명

총무처장관실은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제공합니다. 한 법안에 대해 복수의 찬반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법률은 주의회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찬반 의견, 그리고 주민 발의 또는 주민투표 법안에 대해서는 주민 발의 또는 주민투표 법안의 지지자들이 작성한 찬반 의견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한 차후의 우선순위는 성실한 시민단체와 개인 유권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법률에 따라 제출된 찬반 의견의 문구는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표 법안 소개

주 전체 투표 법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8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 투표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투표 법안이 포함됩니다.

주의회 헌법 개정안

주의회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주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각각 삼분의 이의 찬성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출됩니다. 주의회 헌법 개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회 헌법 개정안은 총 투표 수 중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으면 발효됩니다.

주의회 발의 개정안

주의회가 이전에 발효된 법률에 대한 개정을 발의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주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출됩니다(원래 법안이 특별히 주의회가 유권자의 승인없이 그 법안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주의회 발의 개정안은 총 투표 수 중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으면 발효됩니다.

주민 발의안

종종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주민 발의 과정은 법안을 주 전체 투표에 회부하는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법률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지자들은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의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지자들은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의 8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의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 발의안은 총 투표 수 중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으면 발효됩니다.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총무처장관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에 대해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대형 활자체 또는 오디오 카세트 버전을 주문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vig_altformats.htm*을 방문하거나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MP3 버전을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를 방문하십시오.

수입을 얻으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선거일에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십시오.

선거관리인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선거일에 제공하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선거관리인(poll worker)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권자, 또는
- 다음과 같은 고등학교 학생:
  - 미국 시민권자
  - 봉사하는 날에 16세 이상 된 학생
  - 평균 성적(GPA)이 2.5 이상인 학생, 그리고
  - 품행이 방정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학생

선거 관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주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서에 적절히 통지하고, 감독자가 그러한 신청을 승인하면 직장을 결근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13호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요약

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회부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재산세 금액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적격 내진 보강 개량 공사에 대한 주 전체 기준을 설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내진 개량의 평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경미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비보강 석조(벽돌 등)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개량을 하더라도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비보강 석조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개량은 최대 15년 간 재산세 재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13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지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보강 석조 구조물들을 개량하는 것에 대한 위험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주 헌법의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내진 안전 개량을 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제거함으로써 공정성을 증진시킵니다.

반대 발의안 제13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Senator Roy Ashburn's Support Proposition 13 Committee
P.O. Box 11444
Bakersfield, CA 93389
(661) 861-8100

반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14호

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할 권리 증진.

요약

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회부

연방의회, 주 전체 및 주의회 공직 경선에 대한 예비선거 절차를 변경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입후보자 또는 유권자의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의 입후보자가 총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선거 실시와 관련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에는 큰 순변동이 없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모든 유권자는 대부분의 주 및 연방 공직에 대해 동일한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정당 표시에 상관없이 최고 득표를 한 2명의 입후보자만이 총선거 투표에 진출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유권자들은 계속 가입한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각 정당에서 최고의 득표를 한 입후보자가 계속 총선거 투표에 진출합니다.

찬반 의견

찬성 찬성 투표를 하면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주 및 연방의회 공직에 대해 유권자가 원하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14호 같은 초당파적인 법안은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에서 일할 당파성이 적고 보다 실무적인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 제14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예비선거를 "개방" 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는 사기적인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입후보자들은 더 이상 투표용지에 자신이 가입한 정당을 기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정당에 남아있으면서 "무소속" 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거래는 "개혁" 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14-Californians For An Open Primary
info@YESON14OPENPRIMARY.COM
www.YESON14OPENPRIMARY.COM

반대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2045 Lundy Ave.
San Jose, CA 95131
(408) 473-1000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15호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

요약

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회부

선거운동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합니다. 총무처장관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민간 정치 헌금에 대한 제한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공공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자발적인 제도를 제정합니다. 일반대중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각 입후보자는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는 보조금보다 많은 자금을 모금 또는 지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보조금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자발적인 기부금과 로비스트, 로비 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자에게 2년마다 부과하는 수수료에 의해 조달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4년마다 **총액 6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증가합니다(대부분 로비스트와 관련된 수수료로부터).** 이 자금은 2014년 및 2018년 선거에서 총무처장관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공공 보조금으로 지출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선출직 공직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금지가 해제됩니다. 2014년 및 2018년의 선거에서는 총무처장관직에 대한 입후보자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로비스트와 관련된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선출직 공직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금지가 계속 유효합니다. 총무처장관직에 대한 입후보자는 현재의 규정에 따라 계속 민간 자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로비스트와 관련된 기존의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1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정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규모는 막대하여 정치 제도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는 발의안 제15호가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자금 모금 게임에서 벗어나서 캘리포니아 주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야 하고, 특별 이익 단체에 매수되어서는 안됩니다. www.YesOnProp15.org

반대 발의안 제15호는 속임수입니다. 이 법안은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세금을 인상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특별 이익 단체들로부터 계속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진정한 선거운동 개혁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1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Derek Cressman
Californians for Fair Elections
3916 S. Sepulveda, Suite 109
Culver City, CA 90230
(800) 566-3780
Prop15@CommonCause.org
www.YesOnProp15.org

반대

STOP PROP 15
455 Capitol Mall, Suite 801
Sacramento, CA 95814
info@stopprop15.com
STOPPROP15.com

발의안 제16호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지방정부가 공적 자금 또는 공채를 사용하여 신규 고객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선택 전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공 전기 제공자와 전기 요금에 대한 이 법안의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과 수입에 미치는 순영향은 알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새 지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전기 서비스의 시작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제안들을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16호는 납세자 투표권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전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지출 또는 차입 하기 전에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은 정부가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16호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주의 영리 공익사업체들이 독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경쟁을 제거하여 전기 요금을 계속 인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과 전기요금의 인하를 원하시면 발의안 제16호에 반대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16/Californians to Protect Our Right to Vote
2350 Kerner Blvd., Suite 250
San Rafael, CA 94901
info@taxpayersrighttovote.com
www.taxpayersrighttovote.com

반대

Taxpayers Against the PG&E Powergrab, Sponsored by Local Power, Inc. and The Utility Reform Network
Mindy Spatt
5429 Madison Avenue
Sacramento, CA 95841
(415) 929-8876 x306
www.powergrab.info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17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보험회사들이 운전자가 계속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수입에 대해 큰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보험회사들은 새 고객에게 다른 보험회사에서 신체상해책임보험을 유지했던 기간에 기준하여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보험회사들은 장기 자동차보험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를 변경한 새 고객에게는 그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 금지됩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17호에 찬성하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최대 250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7호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우량 운전자 할인과 마찬가지로 계속 가입 할인을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소비자의 비용을 절약해줍니다. www.YesProp17.org

반대 Mercury Insurance 는 발의안 제17호를 후원하여 보험회사들이 우량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1,000 달러나 인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가 승인한 법안을 무효화하며, 중산층 가정에 피해를 주고 무보험 운전자를 증가시킬 새 보험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소비자 옹호자들은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17-Californians for Fair Auto Insurance Rates
(916) 325-0056
info@YesProp17.org
www.YesProp17.org

반대

Campaign for Consumer Rights
(310) 392-0522
VoteNo@StopProp17.org
www.StopProp17.org

투표소 위치 확인

투표소의 위치는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조정합니다. 투표소 리스트는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뒷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웹사이트와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서 투표소 위치 확인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d.htm*을 방문하거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 내의 모든 투표소에서 잠정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입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확신하나 공식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유권자
-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에 정당 가입 항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유권자, 또는
- 우편투표 유권자이나, 우편투표용지를 찾을 수 없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

잠정투표용지는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해당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고 같은 선거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참고: 2010년 5월 24일 이후에 새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3호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재산세 금액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재평가가 면제되는 내진 보강 개량의 종류에 대한 주 전체 기준을 설정합니다.
- 주의회의 정의에 따라, 적격 내진 보강 개량 공사 또는 재공사의 특정한 구성 부분에 대해 재평가의 면제를 제한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내진 개량의 평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경미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SCA 4(발의안 제13호)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투표 결과
(결의안 제115장, 2008년 법령)

상원:	찬성 37	반대 0
하원:	찬성 78	반대 0

발의안
제13호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지방재산세는 각 재산의 평가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산을 구입하면 보통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평가 가치가 부여됩니다. 재산을 같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재산에 대해 신규 공사를 하지 않는 한, 평가 가치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변동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추가하거나, 면적을 추가하거나,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개조하거나, 건물을 수리하여 새 건물처럼 만드는 신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 가치는 신규 공사에 의해 추가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증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가 새는 지붕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가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 헌법에는 신규 공사 규정에서 제외하는 몇 가지 특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변경 공사에 대한 2개의 별도 조항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조항은 지방 조례가 요구하는 "비보강 석조건물(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개량을 제외합니다. 이러한 개량은 15년 간 재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건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지진 안전 변경 공사를 재평가에서 제외하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두 제외 조항은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발의안

이 헌법 개정안은 기존의 두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지진 안전 개량에 적용되는 단일 제외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이 제외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로 비보강 석조건물에 대한 안전 개량에 적용되는 15년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은 현재 지진 개량에 대해 15년 간 재평가를 제외 받고 있는 석조건물 재산에 대해 이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앞으로 개량을 하는 석조건물 재산에 대해서도 기간 제한이 없이 재평가를 제외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15년이 지난 후에 더 높은 재산 가치로 재평가를 받지 않는 것만큼 지방재산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카운티 평가관들은 (1) 비보강 석조건물이 제외를 받은 기간(년수)을 추적하지 않거나, (2) 이러한 개량을 유지보수 또는 수리로 분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많은 건물들은 전체 건물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15년이 되기 전에 매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에 의해 발생하는 지방재산세 손실은 아마도 경미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3호의 전문은 6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13호 재산세 평가에 대한 제한.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주의회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13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13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지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건물들을 개량하는 것에 대한 위험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주 헌법의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발의안은 내진 안전 개량을 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공평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킵니다.

현재, 지진 발생 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를 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주 헌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진 발생 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를 한 일부 건물들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지진 안전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을 보수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개량한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석조 구조물을 보강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재평가가 무제한으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석조 구조물을 보강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15년에 한해 재평가가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는 안전 개량 공사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 또는 다른 자연재해를 견뎌내려면 오래된 미보강 석조 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개량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진 보강 개량 공사는 미보강 석조 건물을 포함하는 모든 위험한 건물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이 발의안은 건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진 안전 개량 공사를 하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함으로써 이 부당한 정책을 시정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특정한 건물이 내진 보강 개량 공사를 한 경우 그 개량 부분에 대해 재산세 재평가를 면제 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협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978년에 제정된 최초의 발의안 제13호에 규정된 납세자 보호 조항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주 조세형평국과 카운티 평가관의 업무량을 상당히 경감합니다. 그들은 구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내진 보강 공사를 파악하기 위해 더 이상 부동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감소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내진 보강 개량 공사의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정부 재산세의 감소는 경미하며, 이것이 이 발의안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 발의안의 문안은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모든 주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발의안 제13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ROY ASHBURN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TOM J. BORDONARO, JR.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평가관
BARBARA ALBY
수석 부위원
조세형평국 제2지구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발의안 제13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13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14호

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할 권리 증진.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할 권리 증진.

- 예비선거에서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절차를 변경하여 연방의회, 주의회 및 주 전체 공직에 대한 선거 참여 증가를 촉진합니다.
- 모든 유권자가 입후보자 또는 유권자의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여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 입후보자들이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정당 우선 선택이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단 2명의 입후보자가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총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된다고 규정합니다.
- 대통령, 정당 위원회 공직 및 정당과 관련이 없는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선거 실시와 관련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에는 큰 순변동이 없습니다

SCA 4(발의안 제14호)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투표 결과
(결의안 제2장, 2009년 법령)

상원:	찬성 27	반대 12
하원:	찬성 54	반대 20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예비선거와 총선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짝수 연도에 2개의 주 전체 선거인 예비선거(6월)와 총선거(11월)를 실시하여 주 및 연방 공직 입후보자들을 공직에 선출합니다. 이러한 선거들(주지사 및 의회 의원 선거 등)은 당파적 선거로서,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정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파적 공직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에서 그 공직에 대한 각 정당의 피지명자를 결정합니다. 정당 예비선거에서 가장 받은 투표를 받은 입후보자가 총선거에 대한 그 정당의 피지명자가 됩니다. 총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모든 정당의 피지명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중에서 공직자를 선택합니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총선거의 당선자는 그 공직의 임기 동안 봉직합니다.

현행 예비선거 제도에 의한 투표 자료. 각 카운티는 예비선거를 할 때마다 각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은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정당 투표용지에는 당파적 공직, 초당파적 공직과 발의안이 포함됩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초당파적 공직과 발의안만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14호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캘리포니아 주의 당파적 주 전체 선거. 주 공직에 대한 당파적 선거에는 주지사, 부지사, 회계감사원장, 총무처장관, 출납국장, 보험국장, 법무부장관, 120명의 주의회 의원, 4명의 조세형평국 위원이 포함됩니다. (공교육감은 무소속 주 공직입니다.) 또한 당파적 선거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하는 연방 공직에 대해서도 실시됩니다.

발의안

주 헌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대부분의 주 및 연방 공직에 대한 선거 과정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조항 및 관련 규정들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선거에 대해 발효됩니다.

2명의 최고득표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그림 1에 나타난 연방의회 및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에서 단일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입후보자들은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유권자 등록 시 선택한 정당)을 표시하거나 우선 선택한 정당이 없다고 표시합니다. 현재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무소속 입후보자를 포함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이 표시됩니다. 각 유권자는 이 단일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에 등록한 유권자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에 등록한 입후보자, 공화당에 등록한 입후보자 또는 다른 모든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의 입후보자가 총선거에 진출하여 경합합니다. 실제로, 총선거에 진출한 2명의 입후보자가 같은 정당을 우선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1
발의안 제14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직

주 전체 공직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재무국장
회계감사원장
보험국장
법무부장관

기타 주 공직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 조세형평국 위원

연방의회 공직자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발의안 제14호의 전문은 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그림 2는 유권자가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 공직 입후보자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방법과 이 방법이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2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14호를 승인하는 경우 변경되는 투표용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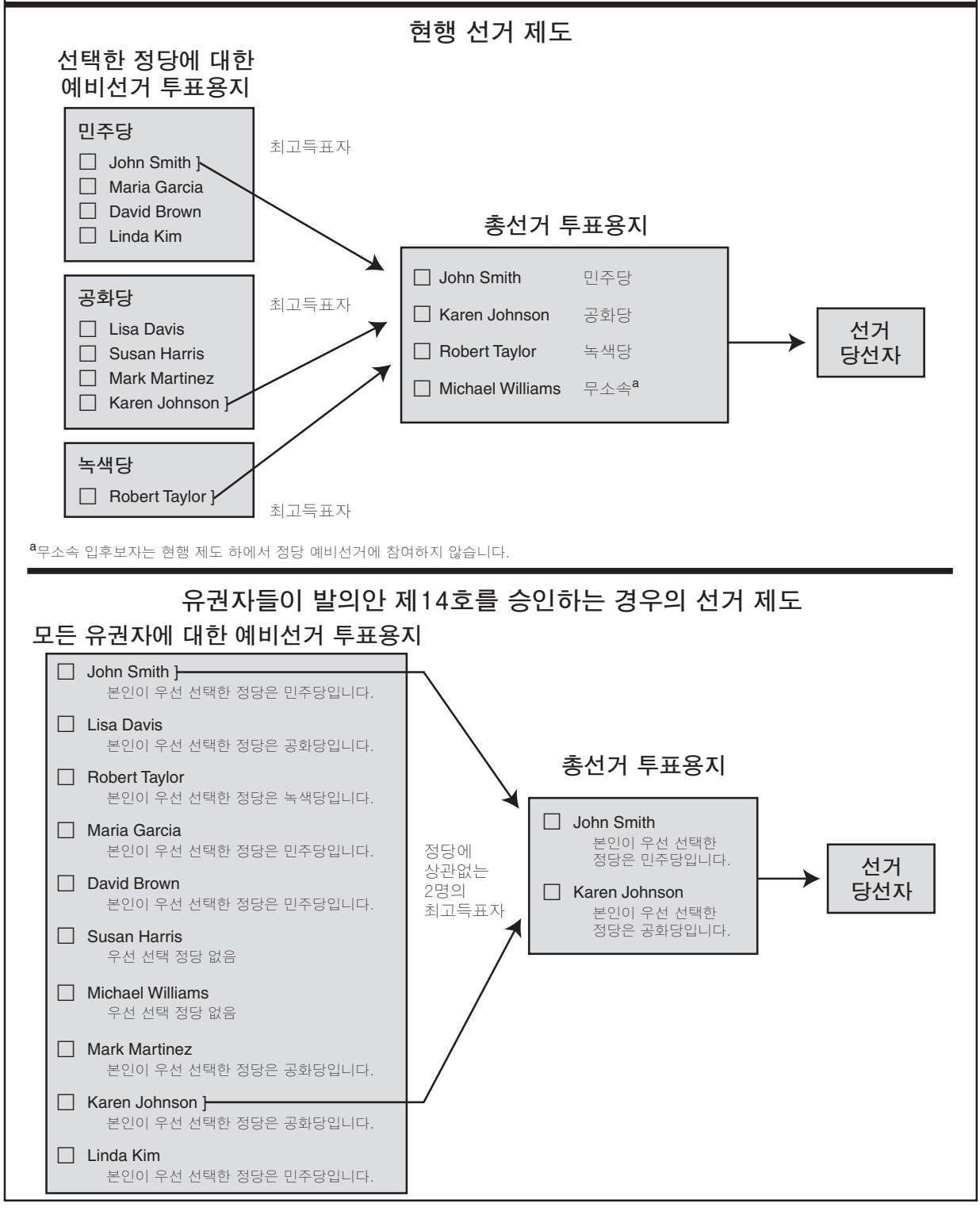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대통령 선거와 정당 지도자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승인되더라도 대통령 입후보자와 정당 공직(정당 중앙 위원회, 정당 간부, 대통령 선거 대의원 포함)에 대해서는 계속 당파적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경미한 비용 및 절약. 이 법안은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투표 자료를 작성, 인쇄, 우송하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주 및 카운티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이 승인되면 모든 입후보자들이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각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길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법안이 선거 비용을 절약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다른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 카운티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총선거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입후보자의 수를 줄입니다(예비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한 2명의 입후보자만이 투표용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용지가 짧아집니다. 이 법안에 의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절약은 비교적 경미하고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석실은 이 법안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불가능한 간접적인 재정적 영향. 어떤 경우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 현행법에 의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공직에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공직자들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 법의 간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알 수 없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14호의 전문은 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발의안 제14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우리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은 12%가 넘습니다.

전원이 현행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의회는 주 예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시키거나 200여 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경직된 당파적 직위를 고수하고 특별 이익 단체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정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논쟁과 정체 상태를 종식시키고 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발의안 제14호는 해낼 것입니다.

- 발의안 제14호는 예비선거를 개방합니다. 유권자들은 주 및 연방의회 공직에 대해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원하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입후보자들을 선출함으로써 정체 상태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 발의안 제14호는 무소속 유권자가 예비선거에서 동등한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발의안 제14호는 타협에 대해 개방적인 실무형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방형 예비선거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현재 특별 이익 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주요 정당의 영향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Fresno Bee,* 09/02/22.)

당파주의는 우리 주를 망칠 것입니다.

발의안 제14호와 같은 초당파적 법안은 우리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AARP,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하는 정부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많은 민주당,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들에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1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비당파성이 적고 실무적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발의안 제1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ON14OPENPRIMARY.com

JEANNINE ENGLISH, AARP
캘리포니아 주 회장
JAMES EARP, 집행 디렉터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발의안 제14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정치인들은 선거 투표용지에서 그들의 정당 가입을 숨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발의안 제14호를 작성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하려는 입후보자가 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또는 녹색당인지 모릅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당파 정치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당 가입을 숨긴다고 해서 어떻게 당파주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발의안 제14호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무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 이해 단체가 발의안 제14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건강보험회사, 개발업자,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하여 수십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발의안 제14호가 통과되면 그들이 "선택한" 입후보자를 선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유권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입후보자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14호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킵니다. 이 법안은 기명 투표 입후보자가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만이 정당에 상관없이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특별 이해 단체들은 그들이 지원하는 입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단 2개 주만이 "상위 2인"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2008년에 139건의 선거를 실시했으나, 단 1명의 현직 공직자가 예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발의안 제14호는 현직 공직자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간호사, 소방대원, 교사들은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과 같은 단체들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14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통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를 원하는 입후보자들이 정당을 숨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특별 이해 단체의 속임수를 막으십시오. 발의안 제14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ED COSTANTIN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정치학과 명예교수
NANCY J. BRASMER, 회장
California Alliance of Retired Americans
STEVE CHESSIN, 회장
Californians for Electoral Reform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발의안 제14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14호는 한밤 중에 작성되었고, 한두 사람의 정치인과 Arnold Schwarzenegger가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약간의 속임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개방형 예비선거"라고 부르지만,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정당 가입을 숨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입후보자들이 그들의 정당을 투표용지에 기재해야 하는 현재의 요건은 폐지됩니다.

또한 발의안 제14호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선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기명 투표 입후보자가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소방대원, 경찰, 교사들의 서비스가 축소되는 시기에 선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담당관들은 선거 비용이 3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당에 상관없이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가 총선거에 진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권이 축소됩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에 속한 2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원들은 2명의 공화당원 중에서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2명의 민주당원 중에서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소속 입후보자 및 녹색당과 자유당 같은 소규모 정당들은 투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선택권이 더욱 축소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까요?

그들이 발의안 제14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형 입후보자 공개"입니다. 모든 입후보자들은 공직에 대한 입후보를 신청할 때 정당 우선 선택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택한 정당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입후보자의 이름은 예비선거 및 총선거 투표용지에 '우선 선택 정당 없음'이라는 표시와 함께 기재됩니다."

정치인들은 매우 머리가 좋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정당에 남아있으면서 "무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거래는 "개혁"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정치인들은 정당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결국 속임수를 쓰는 공화당원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공화당원들은 결국 속임수를 쓰는 민주당원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화자유당 당원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녹색당 또는 자유당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 이익 단체들은 속임수를 쓰는 입후보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숨겨진 이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속임수를 쓰는 입후보자가 지명을 받으면 유권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입후보자에게 기명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4호가 통과되는 경우 숨겨진 조항에 따라 기명 투표는 총선거에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위 2인"의 예비선거 최고 득표자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과격단체 가입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발의안 제14호가 기명 투표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방대원들은 교사, 간호사 및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과 같은 단체들에 동참했습니다.

> "발의안 제14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게 세금을 인상하기를 원합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우리는 "개방형 예비선거"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에 모든 것을 기재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14호에 반대하십시오.

KEVIN R. NIDA, 회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ALLAN CLARK, 회장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KATHY J. SACKMAN, 등록 간호사, 회장
United Nurses Associations of California / Un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 발의안 제14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4호는 새크라멘토와 워싱턴 D.C. 특별구의 혼란스러움에 질려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같은 유권자들이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14호의 반대자들은 주로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특별 이해 단체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기적이고 부당합니다.

사실: 발의안 제14호가 통과되면 지난 10년 간에 대한 모든 입후보자의 정당 등록이 공표됩니다. 이것은 입후보자들이 그들의 정당 등록 이력에 대해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공개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실: 발의안 제14호는 재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개혁의 반대자들은 왜 이런 비난을 할까요? 제 기능을 못하는 현재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발의안 제1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 정당에 상관없이 주 및 연방의회 공직에 대해 가장 뛰어난 입후보자를 선출하여 침체 상태를 극복

• 무소속 유권자에게도 예비선거에서 동등한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제공, 그리고

•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실무형 입후보자를 선출

발의안 제1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www.YESON14OPENPRIMARY.com

JEANNINE ENGLISH, AARP
캘리포니아 주 회장
CARL GUARDINO, 회장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제15호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

- 이 법은 선거운동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합니다.
- 총무처장관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민간 정치 헌금에 대한 제한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공공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자발적인 제도를 제정합니다.
- 입후보자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대중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후보자들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는 보조금보다 많은 자금을 모금 또는 지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이 보조금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보고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금은 자발적인 기부금과 로비스트, 로비 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자에게 2년마다 부과하는 수수료에 의해 조달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4년마다 총액 6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증가합니다(대부분 로비스트, 로비 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부터). 이 자금은 2014년 및 2018년 선거에서 총무처장관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공공 보조금으로 지출됩니다.

AB 583(발의안 제15호)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투표 결과 (2008년 법령, 제735장)

상원:	찬성 21	반대 18
하원:	찬성 42	반대 32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공적 자금으로 선거운동 비용 지불 금지. 주법은 공적 자금을 정치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모든 주 선출직 공직과 대부분의 지방 선출직 공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소수의 헌장 도시들은 주 헌법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한 지방 공직 입후보자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선거운동 자금의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 주의 선거운동 자금 사용과 관련된 주법은 공정정치관행위원회(위원회)와 총무처장관이 시행합니다. 개인과 단체들은 주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 수령, 지출한 자금의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대중에게 제공됩니다. 위원회는 입후보자와 기부자를 감독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입후보자와 기부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로비스트 등록. 총무처장관은 4년마다 주 전체 선거에서 선출하고 주정부의 최고 선거 책임자로 봉직합니다. 또한 총무처장관은 로비스트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과 같은 다른 직무도 수행합니다. 로비란 로비스트의 고용자 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무원과 직접 의사 교환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로비스트, 로비 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자는 2년마다 총무처장관실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등록에 대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로비스트와 관련된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발의안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이 법안은:

-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금지를 해제합니다.
- 총무처장관직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제도를 제정합니다.
- 이러한 공적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로비스트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금지 해제

이 법안은 선출직 공직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금지를 해제합니다. 또한 주의회(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시,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선출직 정책 입안자)가 공적 자금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총무처장관직에 대해서만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그림 1
발의안 제15호의 주요 조항

✓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 금지 해제**

✓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제도 제정**
- 주정부의 최고 선거 책임자인 총무처장관은 4년마다 주 전체 선거에서 선출됩니다.
-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후보자가 수령하는 주정부 자금의 금액은 경쟁하는 입후보자가 더 많은 민간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인상됩니다.
-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에 만료되며, 이것은 이 법안이 2014년과 2018 년의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회는 과반수 의결로 이 만료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로비스트와 관련된 수수료 인상**
- 로비스트와 관련된 수수료를 2년에 700달러로 인상합니다.
-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상된 수수료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6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합니다.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제도 제정

예비선거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금액 및 요건

5달러의 적격 헌금. *예비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는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특정한 수의 5달러 헌금(“적격 헌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주요 정당(즉, 직전의 주지사 또는 총무처장관 선거에서 최소한 10퍼센트를 득표한 정당)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려는 입후보자는 7,500건의 적격 헌금(총 37,500달러)을 모금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의 입후보자들은 3,750건의 적격 헌금(총 18,750달러)을 모금해야 합니다. (현재 이 법안에 의해 주요 정당으로 간주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현재 “군소 정당”으로 간주되나, 차후 선거의 결과에 따라 주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입후보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민간 자금원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적격 예비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림 2에는 이 법안에 의한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 금액과 다른 요건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주요 정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100만 달러의 기본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참여 입후보자들은 비참여 입후보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외부 단체가 지출하는 자금에 상당하는 추가 자금(“상응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참여 입후보자들은 예비선거에서 추가로 최대 400만 달러를 상응 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참여 입후보자가 300만 달러를 모금 및 지출하고 다른 이익 단체가 비참여 입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지출하는 경우, 참여 입후보자는 100만 달러의 기본 자금에 400만 달러의 상응 자금을 추가하여 500만 달러를 지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군소 정당의 적격 입후보자는 200,000달러의 기본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이러한 군소 정당의 입후보자도 3,750건 대신에 15,000건의 적격 헌금(총 75,000달러)을 모금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상응 자금을 최대 800,0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선거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금액 및 요건

정당 예비선거에서 당선. *총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정당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때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예비선거에서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후보자는 총선거에 진출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무소속 입후보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소속 입후보자가 총선거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 입후보자와 동일한 금액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15,000건의 적격 헌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적격 총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금 지원. 주요 정당 입후보자와 광범위한 지지를 증명하는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입후보자에 대한 총선거 선거운동 지원 자금의 기본 금액은 130만 달러입니다. 예비선거에 대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적격 입후보자는 비참여

발의안 제15호의 전문은 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그림 2
이 법안에 의한 총무처장관 입후보자에 대한 적격 요건 및 공적 자금 지원 금액

	필요한 5달러 적격 헌금 건수	예비선거 자금		총선거 자금	
		기본 금액	상응 자금 최대 금액	기본 금액	상응 자금 최대 금액
주요 정당의 입후보자	7,500	$1,000,000	$4,000,000	$1,300,000	$5,200,000
군소 정당의 입후보자	3,750	200,000	자격 없음	325,000	자격 없음
광범위한 지지를 증명하는 군소 정당 입후보자	15,000	200,000	800,000	1,300,000	5,200,000
무소속 입후보자	15,000	해당 없음[a]	해당 없음[a]	1,300,000	5,200,000

[a] 무소속 입후보자는 현재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후보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외부 단체가 지출하는 자금에 상당하는 추가 상응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적격 입후보자는 최대 520만 달러의 추가 상응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 정당의 다른 적격 입후보자는 325,000달러의 기본 금액만을 지원 받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기타 요건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는 아래에 설명된 새로운 규정과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민간 헌금 제한.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입후보자는 민간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 첫째, 입후보자는 5달러의 적격 헌금을 모금해야 합니다(이 적격 헌금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공적 자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 둘째, 입후보자는 예비선거를 실시하기 18개월 전부터 "착수 자금"으로 사용할 헌금을 모금 및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금은 적격 헌금을 모금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착수 자금을 위한 헌금을 등록 유권자 당 100달러로 제한하며, 이러한 헌금의 총액은 선거운동 당 75,000달러로 제한됩니다.
- 입후보자는 정당으로부터 특정한 금액의 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각 예비선거 및 총선거에 대한 공적 자금 기본 금액의 5퍼센트, 즉 예비선거 선거운동에 대해 최대 50,000달러, 그리고 총선거 선거운동에 대해 65,000달러에 해당됩니다.
- 넷째, 이 프로그램에 적격 입후보자를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입후보자는 주로부터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원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민간 기부자로부터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공적 자금은 직접적인 선거운동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타 요건. 공적 자금을 받는 입후보자들에게는 다른 요건들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각 선거 전에 다른 입후보자들과의 토론에 참여하고 선거운동 비용 지출 기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후보자는 초기 착수 자금을 제외하고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선거운동을 하는 입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기타 조항

자금이 부족한 경우 축소된 금액 지급.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의 자금이 모든 적격 입후보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적격 입후보자에 대해 보조금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 입후보자가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입후보자에 대한 규정.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는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참여 입후보자가 지출하는 금액이 참여 입후보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경우, 비참여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지출 금액을 24시간 이내에

법률 분석가의 분석

전자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총무처장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1년에 2,500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도 그러한 지출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금액 조정. 위원회는 4년마다 착수 자금 한도와 이 프로그램의 공적 자금 지원 금액을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조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에 만료. 이 법안은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2019년 1월 1일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 지원은 2014년과 2018년 선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을 통과시켜 만료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선거에 회부되는 다른 법안과의 상호 관계. 이 선거에 회부되는 발의안 제14호는 총무처장관을 포함하는 주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 및 총선거 과정을 변경합니다. 아래의 박스에서는 이 법안과 발의안 제14호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발의안 제14호와 이 법안

이 법안과 함께 이 선거에 회부되는 헌법 개정안인 발의안 제14호가 승인되면 총무처장관을 포함하는 주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 및 총선거 과정이 변경됩니다. 발의안 제14호에는 이 법안에 의해 제안된 선거운동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된 법령 조항과 상충될 수 있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은 특정한 자금 지원에 대한 결정을 *당파적인*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연계시키나, 발의안 제14호가 통과되면 이러한 예비선거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으므로 두 법안의 내용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 상충되는 조항들은 추가 입법, 사법적 조치 또는 차후의 투표 법안을 통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로비스트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 선거 기금의 설립.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은 신설되는 공정 선거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며, 이 기금은 로비스트 에 대한 수수료, 적격 헌금, 잠재적인 자발적 세금 환급 기부(주 개인소득세 양식) 및 기타 자금원에 의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로비스트와 관련된 수수료의 인상. 이 법안은 로비스트, 로비 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자에게 2년마다 700달러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를 향후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아마도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주 자금원이 될 것입니다. 2010년 1월 현재, 4,300여 개인과 단체들이 로비스트, 로비 회사 또는 로비스트 고용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슷한 숫자가 등록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이 수입원은 4년의 선거 주기마다 약 6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입니다.

행정 비용. 이 법안은 4년의 주기 동안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되는 모든 자금의 최대 10퍼센트를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총무처장관실, 위원회, 그리고 이 법안에 의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른 부서에 지급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새로운 주정부 수입. 법률분석실은 이 법안이 4년마다 600여 만 달러를 조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로비스트 수수료와 적격 헌금으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미래의 연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세금 환급 기부와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다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정부 비용. 새로운 자금은 이 법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새 공정 선거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비용은 이 기금에 예치되는 자금의 10퍼센트(4년 주기에 약 6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기로 결정하는 총무처장관 입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총무처장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다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선거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자금을 지원 받는 입후보자의 수
- 공적 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입후보자가 지출하는 자금의 금액(이것은 추가로 지급되는 상응 자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임)

최근의 선거에서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운동 자금의 금액을 고려할 때, 총 비용은 선거운동 당 500만 달러와 800만 달러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추정한 금액을 모든 입후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입후보자에게 지원되는 공적 자금을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5호의 전문은 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발의안 제15호에 대한 찬성 의견 ★

특별 이해 단체의 선거운동 기부자들은 주정부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예산 위기는 우리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록적으로 저조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중산층 가정들은 수입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들의 선거운동 자금을 모금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모금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정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규모는 막대하여 정치 제도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인들이 모금한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금 모금은 특별 이해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는 구실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직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5호는 2014년과 2018년의 선거에서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들에게 한도가 있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시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5호가 통과되면:

- 공적 자금 사용에 동의하는 입후보자들은 7,500명의 등록 유권자로부터 5달러의 헌금과 서명을 받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은 정해진 자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금 또는 지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지출 한도와 보고 요건은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입후보자들은 정당한 비용만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향후에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납세자와 공적 자금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들에 사용되는 자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자금 모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교육에서부터 주 예산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우리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운동 자금 모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유권자들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5호가 통과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운동 자금 기증자들에게 정치적인 혜택을 되돌려주는 대신에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캘리포니아 주 간호사 협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입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료개혁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중요한 공공정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입후보자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금이 좌우하는 선거에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최고의 모금자가 아니라 최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총무처장관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개방할 것입니다.

간호사, 교사, 소기업주, 우수한 정부 전문가, 공공안전 담당 공무원, 소비자 단체, 고령자, 투자자, 환경보호론자, 신앙 공동체, 민주당, 공화당, 독립당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연합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15호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1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선거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야 하고, 특별 이익 단체에 매수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YesonProp15.org*를 방문하십시오.

JEANNINE ENGLISH, 캘리포니아 주 회장, AARP
ZENAIDA T. CORTEZ, 등록간호사, 회장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RICK SCHLOSSER, 의사, 집행 디렉터
California Church IMPACT

★ 발의안 제15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5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하는 일은 납세자의 세금을 부정적인 광고와 정크 메일에 지출하는 것뿐입니다.

이 법안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5호 하에서는 입후보자들이 우리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을 거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그들은 납세자의 비용으로 친척 또는 친구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모든 적격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불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정치인들은 중요한 기존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삭감하여 선거운동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5호를 확대할 때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5호에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법안을 모든 주 선거운동에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기 쉬운 조항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정치인들이 우리의 세금으로부터 조달하는 그들의 선거운동 자금을 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면서, 또한 세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역설적으로 특별 이익 단체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발의안 제15호를 발의한 정치인들은 납세자의 세금으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받는 한편, 특별 이익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세금을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15호의 지지자들은 유권자가 이 법안을 시행해도 추가 세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발의안 제15호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600여 만 달러에 달하는 새 세금을 부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5호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개혁이 아닙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T. ANTHONY QUINN, 박사, 전임 위원장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COLLEEN C. MCANDREWS, 전임 위원장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WILLIAM HAUCK, 전임 위원장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발의안 제15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캘리포니아 주에는 심각하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나,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그러한 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발의안 제15호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속임수입니다.

유권자들은 20여 년 전에 납세자의 세금을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금지 조항을 번복하기 위한 교묘한 시도입니다. 발의안 제15호의 문안에는 "정부법 제85300조를 폐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발의안 제15호를 작성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15호가 *폐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입후보자는 선출직 공직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주의회는 이 속기 쉬운 술책을 사용하여 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납세자의 자금 제공을 확대하고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유권자의 승인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발의안 제15호는 특별 이익 단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15호의 내용은 약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법안은 특별 이익 단체와 로비스트의 영향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로비스트들은 이미 입후보자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발의안 제15호는 로비스트들에게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데, 바로 그 공무원이 로비스트를 규제합니다!

"특별 이익 단체를 규제하는 총무처장관이 바로 그 단체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Bill Jones, 전임 총무처장관

발의안 제15호는 숨겨진 허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발의안 제15호에는 특별 이익 단체들을 규제하는 바로 그 입후보자가 변호(형사 변호 포함) 비용과 자신의 취임 파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러한 단체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선거운동법을 작성하는 정치인들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Gabriella Holt, 회장, Citizens for California Reform

선거운동 비용을 납세자가 제공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입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상관없이 자격만 갖추면 모든 입후보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입후보자들이 자금을 지출하는 데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광고와 정크 메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줄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Colleen McAndrews, 전임 위원장,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발의안 제15호는 세금을 인상합니다.

작년만 해도, 주의회는 *120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했으나, 여전히 주의 예산은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의회는 이제 유권자들이 소기업, 비영리단체, 그리고 자선단체에게까지 부과하는 600만 달러가 넘는 더 많은 새로운 세금을 승인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15호의 한 숨겨진 조항은 새 세금이 모든 적격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자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의회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일반 기금이나 다른 자금원에서 발생하는 다른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세금 인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해서는 안되는 일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법적인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15호에 반대하십시오.*

DEBORAH HOWARD, 집행 디렉터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JACK STEWART, 회장
California Manufacturers and Technology Association
PAUL WEBER, 회장
Los Angeles Police Protective League

★ 발의안 제15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특별 이익 단체의 로비스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5호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주민 단체와 헌법 전문가들이 작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는, 20년 전에 제정된 공적 자금 제공에 대한 제한 조항들을 폐지합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우리 선거의 심판관인 총무처장관을 특별 이익 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반대자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15호가 "세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발적인 기부와 로비스트 및 그들을 고용하는 특별 이익 단체에 부과하는 연간 350달러의 등록 수수료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현재, 로비스트들은 매년 12.50달러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공직 입후보자가 그들이 대표하는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헌금을 요청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그들의 영향력을 박탈합니다. 이것이 로비스트들이 발의안 제15호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15호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들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로비스트들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들을 자금 모금 게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Richard Holober, 집행 디렉터,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발의안 제15호는 엄격합니다.

이 법안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과 지출 용도에 대해 엄격한 새 한도를 부과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과 특별 이익 단체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15호는 부유한 입후보자와 기증자들이 선거를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므로, 정치인들은 기부자가 아니라 선거구민들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위장 단체와 전직 정치인들 뒤에 숨어 있는 로비스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TRENT LANGE, 회장
California Clean Money Campaign
KATHAY FEN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Common Cause

발의안

제16호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지방정부가 공적 자금 또는 공채를 사용하여 신규 고객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신규 지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적 자금 또는 공채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투표는 전기 서비스를 받는 지방정부 관할 지역과 신규 지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제한된 수의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표 요건을 제외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공공 전기 제공자와 전기 요금에 대한 이 법안의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과 수입에 미치는 순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서비스에 대한 조항

캘리포니아 주 전기 제공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제공자 중 하나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습니다: 투자자 소유 공익사업자 (IOU),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 또는 전기 서비스 제공자(ESP). 이러한 전기 제공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소매 전기 서비스의 68퍼센트, 24퍼센트 및 8퍼센트를 각각 제공합니다.

투자자 소유 공익사업자. IOU는 민간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영리를 위해 전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주의 3대 전기 IOU는 Pacific Gas and Electric (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 San Diego Gas and Electric입니다. 각 IOU는 고유하고 정의된 서비스 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 지역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 위원회(CPUC)는 IOU가 부과하는 요금과 고객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는 지역 주민과 사업체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단체입니다.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는 CPUC의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지역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며, 이 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포함하는 서비스 조건들을 정합니다. 전기 서비스는 현재 지방정부가 주법에 의해 허가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다른 정부 조직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와 같은 도시의 공익사업부
-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와 같은 시영 공익사업 지구
- Truckee Donner Public Utility District와 같은 공익사업 지구
- Imperial Irrigation District와 같은 관개 지구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전기 서비스 제공자. ESP는 동일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U 또는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제공 받지 않기로 결정한 고객들에게 전기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전기 고객은 지역 공익사업체의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ESP 와 이른바 "직접 접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서비스의 시작 및 확대

지역사회 선택 통합. 주법은 위에서 설명한 ESP 계약에 추가하여 시나 카운티, 또는 이를 혼합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U 이외의 전기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지역 내에 전기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을 "지역사회 선택 통합"이라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단 하나의 지역사회 선택 통합자(CCA)가 전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 개의 지역사회에서 이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CA는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U의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ESP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내의 전기 고객들은 IOU로부터 계속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CCA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습니다.

공공 전기 제공자의 설립 및 확대에 대한 제안. 최근 수년 간, 제한된 숫자의 캘리포니아 주 지방정부들은 새 공공 전기 제공자를 설립하거나 공공 소유 공익 사업자를 현재 IOU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새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를 검토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는 현재 PG&E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CCA를 설립할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다른 예로, 욜로 카운티는 현재 PG&E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운티 내의 지역에 SMUD를 통해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아래에 설명된 주법의 조항에 따라 유권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공공 소유 전기 제공자에 대한 유권자 승인 요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 소유 공익사업자는 몇 개의 다른 종류의 정부 조직에 의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현재의 서비스 지역 외부로 확대할 것을 고려 중인 각 종류의 지방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주의 특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법령에는 허가를 받은 지방정부 조직이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법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전기 서비스를 새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그 새 지역은 통합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합이 제안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그러한 확대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확대를 제안하는 지방정부 조직의 기존 서비스 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의 투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 위원회가 통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투표를 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CCA의 설립과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지방정부 기관의 조치는 지방정부 기관 관리위원회의 표결로 시행할 수 있고, 지역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세금 수입, 다양한 형태의 부채 및 지방세 납세자 자금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된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전기 서비스를 새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CCA를 운영하기 전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부여합니다.

- 첫째, 허가를 받은 지방정부 조직은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이 제안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둘째, 기존의 공공 소유 공익사업자는 전기 공급 서비스를 새 지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현재 이 공익사업자가

발의안 제16호의 전문은 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삼분의 이와 서비스 제공이 제안된 새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셋째,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CCA를 운영하기 전에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정부에 대해 이러한 유권자 승인 요건을 면제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의 지방정부 관할 지역과 확대가 제안된 지역 내에서 유권자가 이전에 공적 자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 풍력 또는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지정된 종류의 전기를 매입, 제공 또는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전기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인 영향

선거에 대한 지방정부 행정 비용. 이 법안은 현재 유권자의 투표 없이는 실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추가 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로 선거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우송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투표는 이미 일정이 정해진 선거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으로 인해 증가하는 선거 관련 비용은 아마도 경미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 및 수입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이 법안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자와 CCA의 운영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비용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향후에 유권자와 지방정부가 내릴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분석실은 아래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공공 소유 공익사업자의 서비스 시작이나 확대, 또는 CCA의 운영에 대한 새 일반대중 유권자 승인 요건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승인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 유권자 승인 요건은 일부 지방정부 기관들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정도만큼 해당 지방정부 기관의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승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객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기관의 총 수입과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 요금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지방정부 기관들은 이 법안의 새 유권자 승인 요건으로 인해 공공 소유 공익사업자의 서비스를 시작 또는 확대하지 않거나, CCA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및 인접 관할 지역의 전기 고객들이 납부하는 요금이 승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이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새 에너지 기반시설의 건설에 달려있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서비스의 확대를 방해하는 경우, 전기 요금이 승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법안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서비스의 확대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민간 전기 제공자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경우, 전기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승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결과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 자체도 전기의 대량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변동이 사업체의 이익, 매출 및 과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 이러한 요인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순영향은 주 전체로 볼 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새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지방정부 기관의 수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법안의 재정적인 순영향은 알 수 없고, 향후에 유권자와 지방정부가 내릴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발의안 제16호의 전문은 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16호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16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16호, 납세자 투표권법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16호, 납세자 투표권법은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전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지출하거나 공공 채무를 발생시키기 전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부분의 지방특별세와 공채에 대한 결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누가 지역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전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는 요건은 지역 전기 서비스를 인수하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정부 방안에 대한 최선의 보호를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지방정부들은 민간 전기 사업을 인수하려고(종종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시도하고 있으며, 주법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지역 전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지출하거나 공공 채무를 발생시키기 전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없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때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재정적 보호 조치입니다.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및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포함하는 발의안 제16호, 납세자 투표권법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기 서비스, 우리의 공공 자금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우리의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16호, 납세자 투표권법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taxpayersrighttovote.com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발의안 제16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대형 특별 이익 단체가 일으키는 최악의 사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발의안 제1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거대한 영리 민간 공익회사인 PG&E가 주민 발의 절차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PG&E에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6호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세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독점을 계속 유지하고 경쟁을 제거하려는 PG&E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고 더 나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G&E는 여러분을 혼란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위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PG&E를 참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은 현재 많은 지역사회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매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2/3 라는 압도적 다수의 표결이 없이도 전기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PG&E는 이러한 결정을 중지시키기 위해 발의안 제16호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발의안 제16호에 대한 TV 광고를 볼 때, 각 광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Utility Reform Network는 "PG&E가 각 가정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캠페인에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PG&E가 부도를 낸 후에 마치 월스트리트처럼 최근에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는 AARP, 이 법안을 검토한 모든 신문,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납세자, 환경보호론자, 농장주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여 지역의 비영리 공익사업체가 여러분에게 저가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할 기회를 주십시오.

MICHAEL BOCCADORO, 집행 디렉터
Agricultural Energy Consumers Association
LENNY GOLDBER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16호

지역 공공 전기 제공자에 대해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요건을 부과.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16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16호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주의 영리 공익사업체들이 쉽게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6호는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참으로 보호하는 것은 거대한 영리 전기회사가 즐기고 있는 독점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전기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가격과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에 대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발의안 제1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의 비영리 사업체들이 녹색전기를 도매 요금으로 구입하여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6호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기 공급원에 대한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저가의 녹색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고 가격이 높습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16호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의안 제16호의 *유일한* 후원자는 누구일까요?

이 주 최대의 영리 공익사업체인 PG&E입니다. 이 찬반 의견을 작성할 때, PG&E는 "찬성" 캠페인에 650만 달러를 기부했고, 수천만 달러를 더 지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PG&E는 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자금을 기부한 *유일한* 후원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 드리면, PG&E는 그들의 독점사업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16호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PG&E의 영리 독점 전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투표 법안의 명칭과 요약을 읽기만해도 알 수 있습니다.

Fresno Bee가 언급했듯이, "이 PG&E 투표 법안(발의안 제16호)은 강력한 특별 이익 단체들이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주민 발의 절차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AARP는 발의안 제16호가 경쟁을 제한하여 전기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발의안 제16호에 반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G&E와 다른 영리 공익 사업체들은 이미 지방자치체의 비영리 공익 사업체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50억 달러의 전기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기를 원합니다.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는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도를 낸 PG&E를 공공요금 납부자들이 긴급히 구제한 후에도 마치 월스트리트처럼 거액의 보너스를 임원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PG&E는 지역의 소규모 비영리 공익 사업체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그들의 독점사업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Sierra Club은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의안 제16호가 지역사회에서 청정전기 또는 다른 전기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구입하기 전에 2/3 라는 압도적 다수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선택 프로그램은 자발적이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6호는 "지방자치체가 민간 공익사업체와 경쟁하여 주민들에게 재생 가능한 녹색전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직접 겨냥하여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Los Angeles Times의 특별기고가인 Michael Hiltzik은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내용이 매우 다른 또 하나의 낭비적인 주민발의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공익 사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안 제1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EANNINE ENGLISH, 캘리포니아 주 회장
AARP
ANDY KATZ, 회장
Sierra Club California
RICHARD HOLOBER, 집행 디렉터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 발의안 제16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6호의 반대자들은 왜 납세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투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16호의 반대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16호의 반대자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 발의안 제16호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의안 제16호는 녹색전기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6호에 찬성하면 지방정부가 소매 전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거나 많은 빚을 지기 전에 납세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전기회사들보다 전기 사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2001년에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기요금은 치솟았고 순차적인 단전 조치를 겪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대폭 인상되었고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발의안 제16호에 찬성하십시오. 유권자들이 이 법안을 승인하면 소매 전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지방정부의 방안에 대한 최선의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www.taxpayersrighttovote.com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제17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 자동차 보험을 계속 유지한 운전자들이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그리고 전에 보험이 없었다는 것을 가격 책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 보험회사들이 계속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력이 없는 운전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실효가 있으면 운전자가 할인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수입에 대해 큰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17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자동차보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하는 주요한 종류의 보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회사들이 2008년에 수금한 자동차보험료는 약 197억 달러로서, 전체 보험료의 3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 중에는 신체상해책임보험이 있으며,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는 사고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주의 규정.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1988년에 발의안 제103호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을 포함하는 특정한 종류의 보험에 대한 요율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보험국장이 그러한 요율 변경을 검토 및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103호는 자동차보험 요율 및 보험료를 정할 때 다음의 요율 요소를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피보험자의 안전 운전 기록, (2) 피보험자가 매년 운전하는 마일 수, 그리고 (3) 피보험자가 운전한 햇수.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요율 및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요율 요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선택 가능한 요율 요소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그 회사의 장기 고객이었던 개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변경한 새 고객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103호에는 전에 무보험자였던 개인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의안 제103호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개인이 전에 자동차보험이 없었다는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그 개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 또는 (2) 보험 혜택에 대해 부과할 보험료를 결정.

보험료세.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들은 현재 주 법인소득세 대신에 보험료세를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매년 이 주에서 수금한 자동차보험과 다른 종류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금액에 기준합니다. 보험회사들은 2008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세로 약 2억 4,700만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수입은 주 일반기금에 예치됩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보험회사를 변경한 새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계속 가입"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발의안 제103호를 개정합니다. 보험회사가 그러한 할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체상해책임보험에 계속 가입했던 기간에 기준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지난 5년 간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험이 실효되지 않은 한(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제외) 보통 이러한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보험 실효가 타국에서의 군복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안에 의해 계속 이러한 종류의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모의 자격에 근거하여 이러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험회사들이 수금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총액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주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세 수입도 아래에 설명된 이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가입 할인 조항으로 인해 주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정도와 그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할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른 일부의 고객에 대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주 보험료세 수입에 미치는 순영향은 아마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보험료가 주로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 운전, 운전 마일 수 및 운전 경험 햇수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17호의 전문은 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17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 발의안 제17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17호는 자동차보험 비용을 절약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사업을 폐쇄했고, 저축은 감소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비용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의안 제17호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을 같은 보험회사에서 계속 유지한 운전자는 계속 가입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더 낮은 요율을 적용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새 보험회사에서 이 계속 가입 할인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80%의 책임있는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할인 혜택을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17호는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여러분은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가입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17호에 찬성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은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이 증가합니다.
-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과 선택이 제공됩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자동차보험이 있는 가정에 1년에 250달러를 절약해줍니다. 이 법안은 최저 요율의 보험을 찾아보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계속 가입 할인을 유지하게 하여 책임있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Harvey Larsen, 총무-회계 책임자, Consumers Coalition of California

소비자와 소기업들은 발의안 제17호에 찬성합니다.

- California Alliance for Consumer Protection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 Small Business Action Committee
-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
- Consumers First 등

Mercury Insurance를 포함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보험시장의 경쟁과 새 고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경쟁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보험 요율이 인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17호: 경쟁 증가, 보험 요율 인하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우량 운전자 할인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입 할인을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경쟁 상점의 쿠폰을 받아주는 상점이 있는 것처럼, 발의안 제17호는 운전자들이 최저 가격을 알아보면서도 계속 가입 할인을 받는 것을 허용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과 절약,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쟁이 모두 증가합니다."

—Tom Hudson, 집행 디렉터, California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

반대자의 위협 전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 반대자들은 법을 지키고 보험을 유지하는 80%의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할인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제1861.02조)은 보험 요율을 주로 안전 운전 기록, 연간 운전 마일 수 및 운전 경험에 기준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이 법안의 제1861.024 (b)조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실직 또는 보험료 미납 이외의 사유로 보험 가입을 취소해야 하는 운전자들을 최소한 90일 동안 보호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도 여전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자들도 계속 캘리포니아 주의 저가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파견되었을 때 보험이 취소된 군인들의 계속 가입 할인을 보호합니다."

—Willie Galvan, 주 사령관, American GI Forum of California

이 법안을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발의안 제1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경쟁 및 선택이 증가합니다.

www.yesprop17.org

JIM CONRAN, 전임 디렉터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JOEL FOX, 의장
Small Business Action Committee

★ 발의안 제17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Mercury Insurance Company가 자금을 지원하는 발의안 제17호의 지지자들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할인"과 "경쟁"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 법안은 운전을 중단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운전을 시작할 때 연간 1,000달러 (Mercury의 수치에 근거)의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지난 5년 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1일 이상이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질병, 대학 진학, 실직, 군복무 등)가 있더라도 더 높은 요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군대와 그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USA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17호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조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보험회사들이 고객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이 1988년에 통과시킨 법률을 무효화합니다.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Mercury가 99%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고, 군인 또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Los Angeles Times, 10/02/15)

보험회사가 보험 요율을 낮추기 위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안 제17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OHN GARAMENDI, 전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 주
JOHN VAN DE KAMP, 전임 법무부장관
캘리포니아 주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17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경력에 기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허용. 주민 발의 법령.

★ 발의안 제17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소비자 옹호자들은 발의안 제17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수백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사기적인 보험회사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이 법안의 후원자인 Mercury Insurance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률을 변경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책임있는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발의안 제17호를 후원하는 보험회사들은 올바른 사실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은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험국은 발의안 제17호가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자들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onsumer Reports*를 발행하는 비영리단체인 Consumers Union은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과징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책임있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완벽한 운전 기록을 가진 고객들이 단지 지난 5년 간 91일의 짧은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 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운전자들은 과거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러한 부당한 과징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특히 군인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을 중단하는(미국 내에서의 군 복무 포함)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보험 요율을 인상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그들에게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중산층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운전과 다른 필수품 사이에 선택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운전 기록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번 보험료를 늦게 내는 경우, 발의안 제17호는 그 운전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수백 달러를 더 부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발의안 제17호에 규정된 과징금이 현재 불법이지만,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다른 주들에서는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 네바다 주민들은 73%를 더 납부합니다.
- 텍사스 주민들은 84%를 더 납부합니다.
- 플로리다 주민들은 227%를 더 납부합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무보험 운전자를 증가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불경기로 인해 무보험 운전자가 거의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의하면, 발의안 제17호에 규정된 과징금이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감소시켜, 무보험 운전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무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 비용이 인상됩니다."*

무보험 운전자의 증가는 납세자와 주의 재정에 피해를 줍니다.

-> 발의안 제17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보험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Mercury의 발의안 제17호는 "사기적인 가격과 현역 군인과 같은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발의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 법안"이다.

주 법원은 2005년에 Mercury가 운전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7호는 이러한 할증료를 합법화할 것입니다. Mercury가 발의안 제17호를 후원하기 위해 이미 350만 달러를 지출한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 중산층을 희생시켜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들이 특히 경기침체 시에 보험 요율을 인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17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opTheSurcharge.org* 에서 알아보십시오.

HARVEY ROSENFIELD, 설립자
Consumer Watchdog
ELISA ODABASHIAN, 디렉터, 서부지역 사무소
및 주 캠페인 담, Consumers Union당
JON SOLTZ, 회장
VoteVets.org

★ 발의안 제17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7호에 찬성하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부과되는 기존의 할증료가 폐지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책임있는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계속 가입 할인을 상실하여 수백 달러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운전자들에게 250달러나 되는 금액을 절약시켜 줍니다.

발의안 제17호는 운전자들이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가입 할인을 받는 것을 허용하여, 1년에 수백 달러를 절약시켜 주고 경쟁과 선택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80%의 운전자들이 계속 할증료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17호의 반대자들은 법을 지키고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80% 이상의 운전자들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발의안 제17호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운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추가 유예기간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군인들이 해외 또는 다른 주에서 복무하는 동안 보험 가입을 취소하더라도 계속 가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추가보호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직, 질병 또는 다른 이유로 보험 가입이 실효된 중산층 가정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보험 요율을 주로 안전 운전 기록, 연간 운전 마일 수 및 운전 경험에 기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국은 계속 모든 요율 인상 또는 인하를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 사실: 발의안 제17호는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며,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7호에 대한 찬성은 곧 보험 요율의 인하를 의미합니다.

www.yesprop17.org

JOHN T. KEHOE, 회장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WILLIE GALVAN, 주 사령관
American GI Forum of California
TOM HUDSON, 집행 디렉터
California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

★ 공화당 ★

저희 공화당은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가 이 주에 기여한 리더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희 정당으로서는 지금이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전례가 없는 기회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황금의 주 전역에 있는 공화당원들은 경제적 번영, 세금 인하, 정부의 낭비 제거, 그리고 교육의 우수성 회복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미국의 원칙들을 복원하고 미국의 새로운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합니다.

공화당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새크라멘토와 워싱턴 D.C.에서 자신감 있고, 실천하고, 책임을 지는 지도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공화당 입후보자들을 선출해주시면 안전하고 책임을 지는 교육을 보장하고, 세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 동참하여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는 발전된 캘리포니아 주를 재건합시다.

The California Republican Party
Ron Nehring, *의장*
Ronald Reagan California Republican Center
1903 West Magnolia Boulevard, Burbank, CA 91506

(818) 841-5210
웹사이트: www.cagop.org

★ 녹색당 ★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 구입 가능한 저가 주택, 지속 가능한 에너지, 단인 지불자 건강보험, 누진 과세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활기 있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보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 개발을 지지합니다. 녹색당은 기업의 긴급 구제와 법인화를 반대합니다.

녹색당은 다음 사항을 지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 직장 대표,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구입 가능한 저가 주택, 대중 교통 수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지
- 개인의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누진 과세 시행,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탄소세 시행
- 정부 부채 및 적자 지출 종료

헌법상의 권리:

- 인신보호법 지지, 강제적 양형 폐지 및 삼진법 개정 지지
- 애국법 폐지, 이라크에서 철군, 선제 공격을 하는 전쟁 종식
- 직접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토론 및 주 선거에 대한 평등한 참여, 순위 선택 투표, 신뢰성 있는 집계 방법 요구

환경 보호:

- 공공 소유의 안전하고 청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 효율 개선, 보존 및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구 온난화 완화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과 농업용 토지 보호 및 난개발 반대

사회 정의:

- 단일 지불자 건강보험과 무료 공교육 지지
- 불법 이민자의 일할 권리 지지
- 고문과 부당한 감시 종식

녹색당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의 책임, 활기있는 경제,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정의, 헌법상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Green Party of California
P.O. Box 2828, Sacramento, CA 95812

(916) 448-3437
웹사이트: www.cagreens.org

★ 미국독립당 ★

미국독립당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에서 부여된 자유를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저희는 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신봉합니다. 저희는 헌법이 미국이 스스로와 체결한 계약이라는 것을 신봉합니다. 헌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수정 제10조에 보장된 작은 정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과중한 세금이 필연적으로 부과됩니다. 헌법의 성실한 적용은 이러한 부담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통치의 무법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에너지와 창의력을 인간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하고, 낙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신봉하고, 가족이 자유, 연민, 책임, 근로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양육, 훈육 및 교육할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강력한 공동 방어와 결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수정 제2조에 보장된 절대적이고 공존하는 개인적인 권리를 옹호하며, 이러한 공동 방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조약에 의해 침해 받지 않는 국가 주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국경 보안과 우리와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이민 정책을 지지합니다.

American Independent Party
Markham Robinson, *주 의장*
476 Deodara St., Vacaville, CA 95688

(707) 359-4884
(707) 222-6040 **팩스**
이메일: mark@masterplanner.com

정당 취지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당 취지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 ★

민주당은 우리 주의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215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71,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해고되는 것을 방지한 Obama 대통령의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표시를 거부한 유권자들이 저희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당선시키고, Barbara Boxer 상원의원을 재선시키고,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민주당 소속 입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력한 캘리포니아 주를 건설하십시오.

www.cadem.org/signup에서 등록하십시오.

California Democratic Party
Senator John Burton (은퇴), *의장*
1401 21st Street #200, Sacramento, CA 95811

(916) 442-5707 / 5715 팩스
이메일: info@cadem.org
웹사이트: www.cadem.org

★ 평화자유당 ★

캘리포니아 주 평화자유당은 민주주의, 협력, 공유를 표방합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 일반대중을 조직 및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자유당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직업, 주택, 교육, 의료, 청정한 환경 및 균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평등, 이민권, 노동조합, 전국민 단일 지불자 건강보험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취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지불 능력이 가장 많은 미국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저희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미군의 즉시 귀환
2. 최저 임금을 2배 인상
3. 전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단일 의료 시스템

평화자유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peaceandfreedom.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eace and Freedom Party of California
20212 Harvard Way, Riverside, CA 92507

(510) 465-9414
(323) 759-9737

★ 자유당 ★

자유당은 개인의 도덕성과 경제적 평등성을 입법화하지 않을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좌우 교착상태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 학교들이 경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등록금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 민사 결혼 보호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결혼의 평등성을 인정합니다.
-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검토하여 의료 옵션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 발의안 제215호를 집행하여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무기를 소유 및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합니다.
- 산업 로비스트들이 작성하는 관료적 규제가 아닌 녹색 가격과 도심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 소득세 폐지를 위한 일정을 정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상의 역할로 제한하는 자유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른 9개 주에 동참합니다.
- 무분별한 타국의 간섭주의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자발적 협력, 고객의 선택, 시장 활성화 원칙에 근거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자유당원에게 투표하십시오. 권리장전을 이행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역할로 제한하기 위해 일어서십시오. 자유당원에게 투표하여 자유가 있는 국가를 만드십시오.

Libertarian Party
Kevin Takenaga, *주 의장*
14547 Titus Street, Suite 214
Panorama City, CA 91402-4935

(818) 782-8400
이메일: office@ca.lp.org
웹사이트: www.ca.lp.org

정당 취지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당 취지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 전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설명

연방 상원의원

- 연방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이익을 대표할 2명의 상원의원 중 1명을 선출합니다.
- 새 연방법을 발의 및 투표합니다.
- 연방판사, 미국 대법원판사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민간 및 군 고위직을 인준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합니다.

주지사

- 주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부분의 주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감독하고 판사를 임명합니다.
- 새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된 법률을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 주의 연간 예산을 작성 및 제출합니다.
-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 자원을 동원하고 지휘합니다.

부지사

- 주지사가 탄핵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면직되거나, 또는 주 내에 부재 중인 경우, 주지사의 직위와 직무를 승계합니다.
- 주상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표결 결과가 찬부 동수인 경우 결정짓는 한 표를 행사합니다.
-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주 토지위원회 위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총무처장관

- 주의 선거 최고 책임자로서, 주 전체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운동 및 로비에 대한 자금 관련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합니다.
- 특정한 종류의 사업체와 상표를 등록 및 인증하고, 공증인을 규제하고,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호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적 보물들을 취득, 보호 및 공유함으로써 이 주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 동거관계와 사전 의료지시서를 등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비밀주소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특정한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회계감사원장

- 주정부의 최고 재정 책임자로서, 모든 공공자금의 회계 및 장부 기장을 관리합니다.
- 주정부 급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미청구 재산법을 시행합니다.
- 조세형평국과 감사원을 포함하는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 주 운영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합니다.

재무국장

- 주정부의 재정 책임자로서, 주의 투자를 관리합니다.
- 주정부 장단기 공채의 판매를 시행하고, 대부분의 주 기금에 대한 투자 책임을 집니다.
- 대부분 공채 판매와 관련된 몇 개의 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거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회계감사원장과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지출한 주정부 기금을 지불합니다.

법무부장관

-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주법을 균등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 주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의 수장입니다.
- 주정부 소송에서 최고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카운티 지방검사와 보안관을 포함하는 법집행기관을 감독합니다.

보험국장

- 보험국의 모든 기능을 감독 및 지휘합니다.
- 보험회사들을 인가, 규제 및 조사합니다.
- 보험업계와 관련된 공중의 질문과 불만에 답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공교육감

- 주의 최고 공교육 책임자로서, 교육 정책과 지역 학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고, 주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주 고등교육 시스템 관리위원회에 직권상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협력합니다.

조세형평국 위원

주의 선출직 과세위원회인 조세형평국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판매 및 사용세, 담배세, 주류 및 연료세를 포함하는 20여 개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및 면허세 사건에 대한 상소 기구 역할을 합니다.
- 주 전체의 재산세 관리를 감독합니다.

각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속한 카운티

제1선거구

Alameda, Colusa, Contra Costa, Del Norte, Humboldt, Lake, Marin, Mendocino, Monterey, Napa, San Benito, San Francisco,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Barbara, Santa Clara, Santa Cruz, Solano, Sonoma, Trinity, Yolo

제2선거구

Alpine, Amador, Butte, Calaveras, El Dorado, Fresno, Glenn, Inyo, Kern, Kings, Lassen, Los Angeles, Madera, Mariposa, Merced, Modoc, Mono,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Joaquin, Santa Barbara, Shasta, Sierra, Siskiyou, Stanislaus, Sutter, Tehama, Tulare, Tuolumne, Ventura, Yuba

제3선거구

Imperial,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제4선거구

Los Angeles

주 전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 리스트

유권자들이 2000년 11월에 승인한 발의안 제34호는 주 전체 공직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지정된 달러 금액 이하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조세형평국 입후보자들은 이 안내서의 지면을 구입하여 250 단어의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8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주지사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7,768,000달러입니다. 2010년 6월 8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5,178,000달러입니다. 2010년 6월 8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조세형평국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1,295,000달러입니다.

다음의 주 전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 리스트는 2010 년 3월 18일 현재의 최신 리스트입니다. 최신 입후보자 리스트를 보시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htm*을 방문하십시오. 별표(*)는 발의안 제34호에 의한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한 입후보자들을 나타냅니다.

주지사

* Richard William Aguirre	민주
S. Deacon Alexander	녹색
* Stewart A. Alexander	평화자유
* Carlos Alvarez	평화자유
Mohammed Arif	평화자유
Edmund G. “Jerry” Brown	민주
* Bill Chambers	공화
* Lowell Darling	민주
* Vibert Greene	민주
* Douglas R. Hughes	공화
* Ken J. Miller	공화
* Lawrence “Larry” Naritelli	공화
* Robert C. Newman II	공화
* Chelene Nightingale	미국독립
* Dale F. Ogden	자유
* Charles “Chuck” Pineda, Jr.	민주
Steve Poizner	공화
* Markham Robinson	미국독립
Peter Schurman	민주
* Joe Symmon	민주
David Tully-Smith	공화
* Laura Wells	녹색
Meg Whitman	공화

부지사

* Sam Aanestad	공화
Pamela J. Brown	자유
* James “Jimi” Castillo	녹색
Bert Davis	공화
* Yvonne R. Girard	공화
* Janice Hahn	민주
* Dave Harris	공화
* Jim King	미국독립
* Eric Korevaar	민주
* Scott L. Levitt	공화
* Abel Maldonado	공화
* Gavin Newsom	민주
* C.T. Weber	평화자유

총무처장관

* Debra Bowen	민주
* Marylou Cabral	평화자유
* Damon Dunn	공화
* Ann Menasche	녹색
Merton D. Short	미국독립
* Orly Taitz	공화
* Christina Tobin	자유

회계감사원장

Lawrence G. Beliz	미국독립
* John Chiang	민주
* David Evans	공화
* Andrew “Andy” Favor	자유
* Ross D. Frankel	녹색
Nathan E. Johnson	미국독립
* Karen Martinez	평화자유
Tony Strickland	공화

재무국장

* Charles “Kit” Crittenden	녹색
* Robert Lauten	미국독립
Bill Lockyer	민주
* Debra L. Reiger	평화자유
Edward M. Teyssier	자유
* Mimi Walters	공화

주 전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 리스트

법무부장관

* Peter Allen	녹색
* Steve Cooley	공화
Rocky Delgadillo	민주
* John Eastman	공화
* Robert J. Evans	평화자유
* Timothy J. Hannan	자유
* Tom Harman	공화
Kamala D. Harris	민주
Chris Kelly	민주
* Ted W. Lieu	민주
* Pedro Nava	민주
* Mike Schmier	민주
* Diane Beall Templin	미국독립
* Alberto Torrico	민주

보험국장

* William Balderston	녹색
Richard S. Bronstein	자유
* Hector De La Torre	민주
* Brian Fitzgerald	공화
* Dave Jones	민주
* Dina Josephine Padilla	평화자유
Clay Pedersen	미국독립
* Mike Villines	공화

조세형평국
제1선거구

* Sherill Borg	평화자유
* Ted Ford	민주
G. Alan Montgomery	민주
* Kevin R. Scott	공화
* Kennita Watson	자유
* Rae Williams	공화
* Betty T. Yee	민주

제2선거구

* Barbara Alby	공화
* Paul Vincent Avila	민주
* Willard D. Michlin	자유
* Toby Mitchell-Sawyer	평화자유
* Alan Nakanishi	공화
* Chris Parker	민주
* George Runner	공화
Mark L. Stebbins	민주
* Edward C. Streichman	공화

제3선거구

* Vic Baker	공화
* Mary Christian-Heising	민주
* Jerry L. Dixon	자유
Mary Lou Finley	평화자유
* Terri Lussenheide	미국독립
* Michelle Steel	공화

제4선거구

* Peter “Pedro” De Baets	자유
Shawn Hoffman	미국독립
* Jerome E. Horton	민주
Nancy Lawrence	평화자유

공교육감

* Larry Aceves	초당파적
* Karen Blake	초당파적
* Alexia L. Deligianni	초당파적
* Lydia A. Gutierrez	초당파적
* Diane A. Lenning	초당파적
* Leonard James Martin	초당파적
* Grant McMicken	초당파적
* Daniel M. Nusbaum	초당파적
* Gloria Romero	초당파적
* Faarax Dahir Sheikh-Noor	초당파적
* Tom Torlakson	초당파적
* Henry Williams, Jr.	초당파적

공화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AL RAMIREZ
연방 상원의원

P.O. Box 3002
Santa Monica, CA 90408-3002

(310) 985-0645
info@ramirez2010.com
www.alramirez.com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lramirez.com*을 방문하십시오.

TOM CAMPBELL
연방 상원의원

www.campbell.org

제가 Reagan 대통령을 위해 일했을 때, 그는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Obama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키를 잡고 있는 위험한 경제 항로의 방향을 바꾸어서 위대한 미국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14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 다른 외국 투자가들에게 진 빚이므로 미국의 미래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입을 중지하지 않으면 그 빚을 갚는데 3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부도덕합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이고 경영학 교수인 저는 이러한 무모한 지출과 부채의 차입을 긴급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출과 부채가 어떻게 일자리의 증가를 저해하고, 연금을 잠식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비적인 지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은 제가 연방의회에 봉직하고 있을 때 최고 점수를 주었고, 저를 두 번이나 "가장 검소한" 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주 상원의원에 봉직하고 있을 때, California Journal은 저를 "가장 윤리적" 이고, "최고의 문제 해결사" 이며, "전반적으로 최고의 상원의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주정부의 재무 디렉터였을 때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은 편법을 쓰거나 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Tom McClintock은 저의 일하는 방식이 "명확하고 정직하다" 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현재 금년의 연방예산을 7,500억 달러 이상 삭감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ampbell.org를 방문하셔서 저의 계획과 기록을 검토해주십시오. 저는 연방정부의 낭비와 부채의 차입을 중지시키고, 자유를 지키고, 미국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CHUCK DEVORE
연방 상원의원

4790 Irvine Blvd., Suite 105-191
Irvine, CA 92620

(714) 768-2010
info@chuckdevore.com
www.chuckdevore.com

제가 연방 상원의원에 입후보하는 이유는 주의회 의원과 연방 육군 예비군 중령으로 봉직하면서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겠다고 선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급증하는 국가 채무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Tom McClintock 연방 하원의원, Jim DeMint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변화를 원치 않는 기성 단체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열심히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저를 지지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적 원칙을 신봉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반대합니다: 큰 정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연방정부의 낭비적인 경기부양책, 정부의 의료 서비스 인수, 사면, 배출 총량 규제 거래 제도 에너지세 계획. 저는 다음 사항을 지지합니다: 헌법, 세금 인하, 작은 정부, 지출 및 부채 축소, 미국 석유 및 가스 시추, 현대적인 원자력 발전, 캘리포니아 주의 수자원 증가, 국경 보안, 이민 정책에 대해 법치 적용. 정부의 목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서에 명시했듯이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에 대한 "천부의 권리" 를 지키는 것이지, 중국에서 차입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여 우리 행복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04년에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항공우주산업에서 13년 간 일했습니다. 또한 Ronald Reagan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국방부에서 파견되어 백악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진정으로 워싱턴, D.C.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www.ChuckDeVore.com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저에게 투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ARLY FIORINA
연방 상원의원

915 L Street, Suite C-378
Sacramento, CA 95814

(877) 664-6676
contact@carlyforca.com
www.carlyforca.com

저는 비서로 직장 경력을 시작했고, MBA를 취득한 후에 Fortune 20에 속하는 대기업을 이끄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지출과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방관하여 우리의 번영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엄청난 부채를 부담해야 하고 한 세대 동안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입니다. 저는 철저한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 성장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금 신설 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이유이며, 저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금은 구식 정치와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에 물들지 않은 저와 같은 정치적 외부자가 워싱턴으로 가서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싸울 때입니다. 저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모든 연방의회의 자금 책정과 정치적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는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연방 상원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국가 안보 자문위원으로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테러리스트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미국 정책을 수립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저는 Carly Fiorina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ROBERT C. NEWMAN II
주지사
P.O. Box 7465
Redlands, CA 92375
(909) 422-3707
info@newman4governor.org
newman4governor.org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며, 책임을 지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저는 AA, BA(동물학/화학), MA(이론/연구), Ph.D.(임상심리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논문들을 발표했고, 개업을 했고, 경찰 소방 학교와 같은 대학 수준에서 강의했고, 교육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March AFB 유해폐기물 정화 단체의 공동 의장입니다. 저는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FFA 및 4H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자원 담당 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수자원 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여행했습니다. 2명의 자녀와 2명의 손자손녀를 두었고, 49년 간 결혼 생활을 한 저희 부부는 Eagle's Nest Ministries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기업주, 근로자, 농장주, 교사 및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www.Newman4governor.org info@Newman4governor.org

BILL CHAMBERS
주지사
P.O. Box 6019
Auburn, CA 95604-6019
(530) 823-3262
chambers4governor@sbcglobal.net
www.billchambers4governor.com

대기업, 특별 이익 단체, 노동조합 및 개인들이 우리의 정치인들을 지배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세금 인하, 지출 삭감, 작은 정부.

DOUGLAS R. HUGHES
주지사
9828 Petunia Ave.
Fountain Valley, CA 92701
(714) 531-5353
drhughes@hughes4governor.com
www.hughes4governor.com

저는 여러분의 주지사로서 모든 소아 성애자들을 이 주에서 떠나게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산타로사 섬에 구금된 상태로 거주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아동들로부터 격리된 자급자족 마을에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삶이 소중하고 보호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와 여러분에 대한 저의 약속은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출할 자금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출을 하면 사업체들이 번창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정부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저는 35년 간 기업을 소유했으므로, 일자리가 있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금과 규제가 어떻게 사업의 성장을 방해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를 철폐하고 "면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캘리포니아 주 특허법"은 이 주에서 "신생 기업"의 발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촉진함으로써 소기업과 기업가들의 사업 의욕을 고취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그들이 새로 발명한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한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출되면 애리조나 주에서 태평양까지 3중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 55년 간 거주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를 주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주로 만들 것입니다. *Hughes4Governor.com*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ABEL MALDONADO
부지사

P.O. Box 2205
Salinas, CA 93902

(831) 759-2577
abel@abelmaldonado2010.com
www.abelmaldonado2010.com

새크라멘토의 혼잡스러움에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저의 개혁 운동에 동참하여 혼잡을 제거하십시오. 저는 *보수 공화당원* 기업주이고, 새크라멘토의 과도한 지출과 부패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주 상원의원입니다. 저는 주정부의 지출에 대해 엄격한 상한선을 정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비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출 중독자*가 된 정치인들의 손을 묶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고 폭력적인 불법 이민자 죄수들을 본국의 교도소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급여를 줄였으며,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가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새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말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또한 호화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세금을 남용한 고위 공무원들의 엄청난 급여를 공개하여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저는 독립감사원을 설립하여 주정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새크라멘토의 손 큰 지출자들과 싸우다 보니 몇 사람의 강력한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로부터 100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Americans for Tax Reform으로부터 "납세자의 영웅" 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저는 부지사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낭비, 사기, 부패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www.abelmaldonado2010.com을 방문하셔서 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들,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그리고 California Republican Taxpayers Association에 동참하십시오.*

YVONNE R. GIRARD
부지사

(951) 965-3943
girard.yc@charter.net
facebook—girard for lt governor

저는 퇴역 군인으로서 군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해 있는 필요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SAM AANESTAD
부지사

2150 River Plaza Dr., Suite 150
Sacramento, CA 95833

(916) 473-8866
www.voteforsam.com

저는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과 Tom McClintock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으며, 이 두 이름은 세금 및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싸우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차기 부지사는 먼저 납세자들을 위해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저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규모를 증가시키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구강, 턱 및 얼굴 외과의사의 경력으로부터 세부적인 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여당의 주 예산 제안서에 포함된 낭비와 과도한 지출을 공개할 때도 이처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세금 인상과 과도한 지출에 반대하는 새크라멘토의 강력한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금을 인상하고 터무니 없는 과도한 지출을 하는 예산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수입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수적이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차기 부지사 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과 Tom McClintock 연방 하원의원에 동참하여 부지사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MON DUNN
총무처장관
P.O. Box 984
Willows, CA 95988
damon@damondunn.com
www.damondunn.com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과 소기업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Damon Dunn이 총무처장관에 입후보하는 이유입니다. 16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Damon은 Stanford University를 졸업했고, NFL 선수로 활약했으며, 성공한 소기업주가 되었습니다. Damon은 Latino Educational Attainment Initiative, Make a Wish Foundation, Fighting Giants Ministry, St. Augustine Soup Kitchen, Cops-N-Kids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많은 희망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Damon은 프로 미식축구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Damon은 사업가로서 정부가 종종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Damon은 총무처장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것입니다: 1)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 환경 개선, 2) 최고 선거 책임자로서 투표의 정직성 보장.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고, 일자리를 다른 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 주를 떠나는 이유를 확인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Damon은 기업들이 우리 주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 절차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Damon은 유권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간단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디오를 빌릴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처럼,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www.DamonDunn.com.

MIMI WALTERS
재무국장
www.mimiwalters.com

우리 주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방만한 지출과 무책임한 예산 책정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은 접촉할 수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비즈니스와 재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저는 새크라멘토에서 자금을 방만하게 지출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새 재무국장으로 선출되면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주의회에 *균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막고*, 재무국을 정비할 것입니다. 저는 상원 윤리위원회 의장으로서 주정부의 책임과 정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상원 세입 및 과세 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주의회가 승인한 모든 무책임한 예산, 우리 주를 재정 위기로 몰아넣은 예산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저는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싸워왔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저는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과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전문 경력에는 투자 금융 담당 임원으로 7년 간 재직한 것과 제가 사는 도시의 시장, 상원의원을 역임한 것 등이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 Women's Leadership Association의 설립자이고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와 American Cancer Society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의* 재무국장으로 선출되면 *새크라멘토의 정치인과 특별 이익 단체가 아닌 유권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miWalters.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던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STEVE COOLEY
법무부장관

10153½ Riverside Drive, #155
Toluca Lake, CA 91602

(213) 598-5058
info@stevecooley.com
www.stevecooley.com

저는 Steve Cooley 지방검사입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선출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정부의 사기, 부패 및 권한 남용을 척결하고, 새크라멘토의 정직성과 재정적 보수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L.A. 카운티의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정치인, 정부 공무원과 부패한 법률가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공공 정직성부*를 설치했습니다. 저의 부서는 1,000명이 넘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삼진법"에 의해 기소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지방검사들보다 더 많은 사형 유죄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피해자 영향*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고령자와 아동 학대 및 성적 학대 피해자와 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살인범, 강간범, 갱단, 아동 성추행자를 직접 수감한, 일선 경찰관과 검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진 *유일한* 법무부장관 입후보자입니다. 저는 법망을 피해 멕시코로 도주한 살인범들(David March 보안관 대리의 살인범 포함)을 멕시코로부터 압송한 것을 인정 받아 국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California Narcotic Officers' Association는 저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강인한 지방검사" 라고 부릅니다. 전임 공화당원 주지사인 Pete Wilson과 George Deukmejian, 그리고 수천 명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법집행 기관들이 저를 지지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주민의 법률가" 가 되어 정부가 납세자와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폭력 범죄를 철저히 방지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할 것입니다.

JOHN EASTMAN
법무부장관

3553 Atlantic Avenue, #362
Long Beach, CA 90807-5605

(562) 426-8126
info@eastmanforag.com
www.eastmanforag.com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부장관은 주민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동안 수감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범죄자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는 "삼진법" 과 같은 엄격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률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검사들은 형사 검찰관이 되기 위한 고급 교육을 받아야 할 때 Chapman University Law School의 학장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대학은 그들의 업무 수행을 향상시키고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우리의 교도소를 과밀하게 만들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연방정부*에 국경 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수감자들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저는 수감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 를 만들어 수천 명의 폭력 범죄자들을 교도소로부터 임시 석방한 *진보적인 활동가 판사*들과 싸울 것입니다. *저는 또한 납세자, 소기업, 유권자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세금을 인상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규제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권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 연방 대법원을 포함하는 최고법원에서 사건들을 변론했습니다. 저는 Boy Scouts, Pledge of Allegiance, 종교의 자유, 재산권, 토지 수용권에 대해 싸웠습니다. 저의 입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EastmanForAG.com을 방문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과 후세들을 위해 자유의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TOM HARMAN
법무부장관

2150 River Plaza Dr., Suite 150
Sacramento, CA 95833

(916) 473-8866 Ext. 7
www.harman4ag.com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삼진법"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삼진법" 의 작성자들—Mike Reynolds와 전임 공화당원 총무처장관인 Bill Jones—이 저를 법무부장관에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제가 "삼진법" 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공공 투표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공화당원 입후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중범자들을 조기에 석방시켜 우리의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공공 투표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공화당원 입후보자입니다. 수감자들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방치하는 것은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가 현재 수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건강보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수감자들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이것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저는 상습적인 범죄자들을 수감하고, 사형 제도를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법률을 후원했습니다. 저는 젊은 변호사였을 때 저의 법률 경력을 Lucas and Deukmejian 법무법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간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소기업주들을 변호했고, 사형 입법을 후원했고, 폭력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주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민들의 법률가이고 옹호자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평상시와 같이 우리의 법률을 보호하고 정치의 개입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삼진법" 을 계속 시행하고, 공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리의 이웃을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중히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MIKE VILLINES
보험국장
P.O. Box 606
Fresno, CA 93709
staff@mikevillines.com
mikevillines.com

전임 주지사인 Pete Wilson은 Mike Villines가 "사람들을 한데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말했고, 전임 주지사인 George Deukmejian은 "그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인 Mike Villines가 보험국장이 되면 소비자 보호와 경제 재건이라는 2가지 주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건강보험도 함께 옮기고, 소비자들이 보험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마음의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Mike Villines는 보험산업이 캘리포니아 주 경제의 십분의 일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산업을 타주로 몰아내는 것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능률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임 하원 공화당원 지도자였던 Mike Villines는 보험 사기가 캘리포니아 주민 1인당 평균 5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알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게 만드는 보험 사기를 척결할 것입니다. 재정적 보수주의자인 Mike Villines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을 줄이는 비용 억제 방안을 지지합니다. New Majority California의 의장인 Larry Higby가 "...그는 일자리의 창출이 건강한 사업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말한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3 자녀의 아버지인 Mike Villines는 또한 기존 병력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www.mikevillines.com*을 방문하십시오.

BRIAN FITZGERALD
보험국장

보험에 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험국장이 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시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입니다. 16년 간 헌신적인 공복이었던 저는 보험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 더 높은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 직위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ALAN NAKANISHI
조세형평국 제2지구
1136 Junewood Court
Lodi, CA 95242
(916) 473-8866
www.alannakanishi.com

취업/경제 전문가인 저의 직무는 납세자의 감시자가 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이신 여러분께 드리는 3 부분으로 된 저의 개인적인 약속은 우선 제가 재정적 보수주의자의 가치관을 항상 고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정부 규제기관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낭비적인 지출을 막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근면함과 인내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역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논밭과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육군의 소령으로 복무했습니다. 저는 주의회에서 봉직했고, 많은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재해 보상 법안을 공동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취업/경제 전문가로서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대신해서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화당원이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낭비가 심한 정부와 지출을 삭감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세자이신 여러분이 제가 이 중요한 세금 관련 기관에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던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GEORGE RUNNER
조세형평국 제2지구
P.O. Box 984
Willows, CA 95988
info@georgerunner.com
www.georgerunner.com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과 사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이 저를 지지합니다.* 주 전체 납세자 감시 단체의 *납세자 옹호자*, 사업가 및 주 상원의원(면세 서약을 지킨)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저는 납세자이신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할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규제와 관료주의로 일자리의 증가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선출되면 현상유지를 타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저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Tea Party 활동가들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념이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금에 대한 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은 자유를 잃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법인 Jessica법을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주의회가 Jessica법을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에 회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Amber 경고를 설립하여 거의 200명에 달하는 유괴된 아동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의 임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GeorgeRunner.com을 방문하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BARBARA ALBY
조세형평국 제2지구
barbara@barbaraalby.com
www.barbaraalby.com

정치인들과 세금이 지긋지긋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입후보한 이유이며, 저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자들이 이웃으로 이사올 때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Megan법" 을 작성하여 수천 명의 아동들을 성추행으로부터 구했습니다. *ACLU는 "안된다" 고 했으나, 저희는 이겼습니다!* 저는 재산세를 낮추는 발의안 제13호의 공식 지지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하는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BOE는 주의회보다 더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세형평국 위원인 Bill Leonard의 수석 부위원이고 납세자 옹호자인 저는 정부 공무원들과 효과적으로 싸워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백만 달러 절약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고 서비스는 적게 받고 있다고 믿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보수주의자입니다!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는 저를 "올해의 세금 옹호자" 로 여러 번 지명했습니다.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의 Jon Coupal은 "우리는 Barbara를 대단히 존경하며, 그녀는 보수주의자로서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alifornia Taxpayers Committee: "Barbara는 훌륭한 보수주의자이고 *최고의* 납세자 옹호자입니다."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 "Barbara는 BOE 최고의 납세자 옹호자로서 소기업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화당원 클럽, 자원봉사자, 납세자 단체들이 추천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barbara@barbaraalby.com으로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주, 아내 및 어머니로서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납세자*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투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DWARD C. STREICHMAN
조세형평국 제2지구
734 E. Serena Avenue
Fresno, CA 93720
(559) 273-6518
ed@streichmanforboe.com
www.streichmanforboe.com

저는 지난 25년 간 주 조세형평국 세무 감사관으로서 영업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왔습니다. 세무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저는 납세자들을 위해 이 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영업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이 기관 내에서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싸울 대표자를 보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세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은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 조세형평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VIC BAKER
조세형평국 제3지구
P.O. Box 2618
Spring Valley, CA 91979-2618
(800) 533-1396
info@vicbakerforboe.com
www.vicbakerforboe.com

간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MICHELLE STEEL
조세형평국 제3지구
27520 Hawthorne Blvd., #270
Palos Verdes, CA 90274
(310) 697-9000
michellesteel@shawnsteel.com
www.steelforboe.com

납세자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 세무 기관들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소기업주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싸웠고, 열심히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간 디지털 인터넷 다운로드에 대해 5억 달러의 세금(이른바 I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정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정부가 5,500여 소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4,200만 달러의 예납세 환급을 지연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소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끝없는 규제 때문에 매일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정부가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축소하여 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거의 30년 전에 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저의 어머니가 조세형평국에 가서 부당한 세금 고지서에 대해 항의하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조세형평국 위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조차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낙담했습니다. 결국, 거대한 주 기관과 싸울 방법이 없었던 어머니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어떤 납세자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가 조세형평국에 있는 한, 저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강력한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www.SteelforBOE.com.*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LAURA WELLS
주지사
P.O. Box 10727
Oakland, CA 94610
(510) 225-4005
info@laurawells.org
www.laurawells.org

제가 녹색당에 가입한 것은 가치관 때문입니다. 저는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주 회계감사원장에 2번 입후보했으며,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 주 녹색당 당파적 투표에서 400,000여 표의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주지사에 입후보합니다! 50여 명의 선출된 시장, 시의회 의원, 카운티 의회 의원, 학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는 수백 명의 녹색당원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에 투자하기 위해 주립은행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및 손자손녀들은 사람들을 계속 가정에 남아있게 하는 발의안 제13호의 장점을 존속시키고, 부자 중의 부자만을 보호하는 삼분의 이의 표결을 폐지하여 단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녹색당을 구축하는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www.LauraWells.org

JAMES "JIMI" CASTILLO
부지사
305 N. Second Avenue, #225
Upland, CA 91786
ltgov@jimicastillo.org
www.jimicastillo.org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www.jimicastillo.org를 참조하십시오.

ANN MENASCHE
총무처장관
1228 26th Street
San Diego, CA 92102
(619) 702-5856
ann@voteann.org
www.voteann.org

깨끗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선거를 지지합니다. *대기업의 파워가 아닌 주민의 파워!* www.voteann.org.

ROSS D. FRANKEL
회계감사원장
www.electross.com

www.electross.com

CHARLES 'KIT' CRITTENDEN
재무국장
11300 Foothill Blvd., #19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 899-1229
ccrittenden@csun.edu
crittendenforstatetreasurer.com

crittendenforstatetreasurer.com을 참조하십시오.

PETER ALLEN
법무부장관
www.peterallenforag.com

www.peterallenforag.com을 참조하십시오.

WILLIAM BALDERSTON
보험국장
2321 Humboldt Ave.
Oakland, CA 94601
(510) 436-5138
bbalderston@earthlink.net
healthforall2010.net

healthforall2010.net*을 참조하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독립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DON J. GRUNDMANN
연방 상원의원
425 E. Merle Ct.
San Leandro, CA 94577
(510) 895-6789
stoptheirs@hotmail.com
truthusa.org

주민 여러분, truthusa.org에서 "The Restoration of America" (미국의 회복) 이라는 글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510) 760-0968로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CHELENE NIGHTINGALE
주지사
P.O. Box 901115
Palmdale, CA 93590
contact@nightingaleforgovernor.com
www.nightingaleforgovernor.com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공 혜택으로 매년 12,000,000달러의 비용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발생합니다. 센트럴밸리의 농업에는 빙어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2,000,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Schwarzenegger의 지구 온난화 "해결책" 은 캘리포니아 주의 비즈니스를 위축시켰습니다. "우리 주민" 들의 힘으로 전업 입법가, 특별 이익 단체 및 거액 지출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를 되찾읍시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 여성 기업가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자금 해결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자유, 주 및 개인의 권리를 위해 선거에 참여합니다! www.nightingaleforgovernor.com

MARKHAM ROBINSON
주지사
476 Deodara St.
Vacaville, CA 95688
(707) 448-7062
mark@masterplanner.com
www.markhamrobinson4gov.com

www.MarkhamRobinson4Gov-2010.com

ROBERT LAUTEN
재무국장
P.O. Box 121
Brea, CA 92822
robertlauten.com

캘리포니아 주, 미국, 사람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Obama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합니다. *www.LaRouchePAC.com.* 투표 발의안 *www.suspendAB32.org*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BARBARA BOXER
연방 상원의원

P.O. Box 411176
Los Angeles, CA 90041

(323) 254-1001
info@barbaraboxer.com
www.barbaraboxer.com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주이고, 제가 여러분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봉사해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와 미국이 매우 심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 의장인 저는 우리의 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의 보수를 통해서 수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중요한 교통시설들을 확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새 청정 에너지 경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우리의 지역사회, 환경,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 소방대원, 사업계 지도자, 근로자, 간호사,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의 가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ICHARD WILLIAM AGUIRRE
주지사

4564 Leon Street
San Diego, CA 92107

(619) 226-6279
richard@aguirreforgovernor.com
www.aguirreforgovernor.com

태양전지판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1,000만 주택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매월 3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수익*을 탈염공장, 교육, 의료, 교통에 *투자할 것입니다. www.aguirreforgovernor.com*

GAVIN NEWSOM
부지사

4104 24th Street, #766
San Francisco, CA 94114

(415) 963-9240
gavin@gavinnewsom.com
www.gavinnewsom.com

제가 부지사에 입후보하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새크라멘토를 바로잡고 주정부를 개혁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겸 감독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능력이 증명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미국 최초로 모든 주민에게 기존 병력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 및 교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험 점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를 해고하고 있으나, 우리는 교육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 태양열 인센티브, 가장 높은 재생률, 가장 엄격한 그린 빌딩 표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직업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새 그린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Jobs Now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000여 명을 취업시켰고, 3,500만 달러의 지역 임금을 발생시켰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이 지역의 사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납세자 세금을 보호하는 균형 예산과 건전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성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에 입후보했고 주정부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낙관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ERIC KOREVAAR
부지사
1720 Torrey Pines Road
La Jolla, CA 92037
(858) 692-0459
www.voteforeric.com
iwillsavetaxpayerstenmilliondollarsbydoingthejobmyself@voteforeric.com

저는 직업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로서 새크라멘토에 개혁을 위한 분석 능력과 새로운 사고를 도입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학교 교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전에 정부의 간접 비용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성공한 소기업주로서 부지사의 많지 않은 책임을 예산이 책정되는 30명의 스탭이 없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의 세금을 1,000만 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직위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은 저는 주 토지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이사회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로비스트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제가 스탭이 없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재정 긴축의 뛰어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JANICE HAHN
부지사
janicehahnforlg@gmail.com
www.janicehahn.com

제가 부지사에 입후보한 이유는 우리 주에 대해 보수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 청정한 환경, 개선된 공공안전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여성 기업가의 경력을 가진 저는 교육이 일자리 및 경제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가 저의 입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UC와 CSU의 이사로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여성 시의원으로서 공공안전을 보호했고, 최초 대응요원들에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주 전체에서 62,000여 명의 치안관을 대표하는 이 주 최대의 법집행 단체인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PORAC)*, 그리고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가 저의 입후보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부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경제 개발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제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그리고 *Pipe Trades, Longshore* 및 *Ironworkers*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16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사를 선출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과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도 저의 입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저의 입후보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 에너지 및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부지사 캘리포니아 주의 차기 부지사로 선출하기 위해 한 표를 던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EBRA BOWEN
총무처장관
600 Playhouse Alley, #504
Pasadena, CA 91101
(626) 535-9616
info@debrabowen.com
www.debrabowen.com

현직 총무처장관인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모든 투표가 집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2008년에 정직한 선거에 대한 전국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아 John F. 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debrabowen.com을 방문하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PEDRO NAVA
법무부장관

P.O. Box 90459
Santa Barbara, CA 93190

(805) 899-2600
pedronava@pedronava.com
www.pedronava.com

Pedro Nava는 능력이 증명된 검찰관이고 유능한 범죄 투사입니다. 그는 2008년과 2009년에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에 의해 "*탁월한 입법가*"로 지명되었습니다. 프레즈노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부지방검사였던 Pedro Nava는 폭력 범죄자, 상습적 갱단, 그리고 마약 두목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문성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는 지역 검찰관으로 표적 마약 기소와 자산 몰수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형사 사기 범죄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했습니다. 2004년에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Pedro Nava는 폭력적인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Pedro Nava는 자연재해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Nava는 비상사태 관리 공동 입법 위원회의 부의장이고, 캘리포니아 주 비상사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비상사태 대비 및 조국 안보 활동을 능률화 및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해안 위원회의 전임 위원인 Pedro Nav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근해 석유 시추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의 선두에 서있습니다. Pedro Nava는 일반대중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법무부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는 폭력 범죄, 독성 오염물질, 일반대중의 신뢰를 저바리는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Pedro Nava는 일선 치안관, 보안관 대리, 경찰서장 및 보안관들이 법무부장관으로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Pedro Nava는 법무부장관에 입후보한 능력이 증명된 검찰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edronava.com을 방문하십시오.

ALBERTO TORRICO
법무부장관

10923 Randall Street
Sun Valley, CA 91352

(916) 492-8781
alberto@albertotorrico.com
www.albertotorrico.com

우리 주의 역사상 최초로, 주정부는 교도소에 고등교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개혁하고 *교육*이 우리의 미래와 공공안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은 석방된 수감자의 70퍼센트가 3년 후에 되돌아오는 우리 교도소 시스템의 회전문을 닫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수감자들이 석방되기 *전*에 작업, 학습 또는 치료를 통해서 재활할 것을 *요구*하여 교도소를 개혁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강력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이웃에 있는 유아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추출료를 대형 석유회사에 부과하여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잡역부로 일했던 중남미인과 아시아인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제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새 주민들에게 대학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가 제공하는 기회의 진정한 정신을 알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실패한 교도소가 아니라 우수한 학교에서 배양됩니다. 법집행 기관들은 죄수의 60퍼센트가 기능적 문맹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재활시키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때문에, 저는 그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령자,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그리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60,000여 명의 경찰관과 보안관 대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MIKE SCHMIER
법무부장관

1475 Powell Street
Emeryville, CA 94608

(510) 919-9327
mike@votemikeag.com
www.votemikeag.com

법무부장관에 대한 헌법상의 첫 요건과 직무는 "주법을 균등하고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직업, 교육, 의료, 교통, 환경, 주택 등과 관련된 주법)은 균등하거나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은 90%의 항소 의견을 미래의 사건에 사용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결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말라는" 명령이 발부됩니다(형사 기소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500달러의 "신호위반 카메라 티켓" 을 무효화하는 7건의 "미발표 의견" 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측 가능성, 신뢰성 및 기대는 쓸모없게 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의견에 의해 삶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주의회에 로비를 하여 이러한 의견을 인용할 주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몇 건의 법률을 파기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은 연방법원에 대해 이러한 권리를 회복시켰고 대부분의 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는 이러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심한 제한을 받습니다. 2명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들은 현재 12년 임기에 재선되기 위해 입후보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왜 모든 의견과 판결을 미래의 사건에 대한 선례 또는 실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할 역사적 권리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자유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극도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법원, 형사 사법 제도, 법적 절차, 금융 시장에 대한 진정한 개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법을 균등하고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ww.NonPublication.com을 참조하십시오.

TED W. LIEU
법무부장관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info@tedlieu.com
www.tedlieu.com

제가 법무부장관에 입후보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에서 여전히 최고의 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저희는 모르는 사람의 집의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벼룩시장에서 값싼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몇 년을 고생한 끝에 선물 판매점을 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에, 저희는 6개의 점포를 추가로 개점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근면함과 인내를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희생으로 저희 가족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신분이 상승되었고, 저와 제 동생은 Stanford University와 Georgetown Law School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준 미국에 보답하기 위해 미공군에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저는 예비군에서 법무감과 검찰관으로 계속 복무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취향 또는 사회경제적 신분에 상관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과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이해 단체들과 끊임없이 맞서왔습니다. 저는 올바른 싸움을 하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저는 전임 법무부차관인 저의 훌륭한 아내 Betty, 그리고 다루기 힘든 두 아들과 함께 여러분의 한 표를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HECTOR DE LA TORRE
보험국장

5015 Eagle Rock Blvd., #100
Los Angeles, CA 90041

(323) 254-5700 Ext. 25
hector@delatorre2010.com
www.delatorre2010.com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건강보험회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국장에 입후보합니다. 저의 5개월 된 딸이 희귀한 감염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건강보험회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의사의 희망과는 달리, 그들은 제 딸을 교통이 혼잡한 러시아워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 딸을 급식 튜브를 부착한 채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보험국장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것입니다. 가입자가 병에 걸린 후에 보험회사가 혜택을 빼앗아가면 저는 로비스트와 맞서 싸우고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는 법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여, 보험회사의 공무원들이 의학적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기존 병력에 근거하여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고령자들이 생명보험과 연금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정치 헌금을 거부*하기 때문에 특별 이익 단체와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투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 동료가 머리에 총을 맞은 후에도 남가주의 고향에서 부패한 공무원을 소환하는 것을 주도했으며, 그들의 책임자를 구속시켰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 소방대원, 경찰관과 소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이 없는 보험회사와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DAVE JONES
보험국장

1005 12th St., Ste. H
Sacramento, CA 95814

(916) 349-4236
assemblymemberjones@gmail.com
www.davejones2010.com

우리는 보험회사와 맞서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용기있고, 정직하고, 독립적인 보험국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Dave Jones가 필요합니다.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는 *Dave Jones*를 *"소비자 옹호자"*로 *지명했습니다.* Dave Jones는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Dave Jones는 하원의원으로서 아동과 가정, 저가 주택, 교육, 소비자와 환경 보호, 의료, 개인 정보 보호권, 근로자의 권리, 민권, 법원의 평등한 이용,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7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ave Jones는 보험회사의 차별을 중지시키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Dave Jones는 고령자들이 권한을 악용하는 후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ave Jones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24억 달러가 넘는 새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Dave Jones*는 *Capitol Weekly*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유능한 입법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Dave Jones는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법률 지원 변호사로서 고령자, 저소득층 가정, 입주자, 소비자에게 무료 법률 대리를 제공했습니다. Dave Jones는 1995년에 백악관 연구원으로 선발된 단 13명의 미국인 중 하나였으며, Clinton 행정부에서 Janet Reno 법무부장관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보험국장 입후보자인 Dave Jones는 보험회사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독립성을 보유할 것입니다. Dave Jones는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 보험국장 입후보자인 Dave Jones에게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avejones2010.com*을 방문하십시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BETTY T. YEE
조세형평국 제1지구
601 Van Ness Avenue, #E3-438
San Francisco, CA 94102
(415) 759-8355
info@bettyyee.com
www.bettyyee.com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주의 경제를 소생시키는 데 일조함으로써 제 선거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샌프란시스코에서 소기업인 세탁소를 시작하여 30년 동안 운영한 이민자 부모의 자녀인 저는 제 부모님이 호경기 또는 불경기에 상관없이 이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정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세형평국 위원으로서 무료 납세자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주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보장하고, 주정부의 수입을 현명하게 지출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제가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입니다. 저는 주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25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정부로부터 가장 능률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저의 경험, 모든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주의 세법을 공정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뛰어난 감각,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깨끗한 기록에 비추어볼 때, 제가 조세형평국에서 저의 서비스와 리더십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계속 여러분을 대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을 갖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HRIS PARKER
조세형평국 제2지구
P.O. Box 161527
Sacramento, CA 95816
(916) 208-2136
chris@parkerforboe.com
www.parkerforboe.com

제 이름은 Chris Parker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전문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과 고령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로 싸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침체된 경제, 실업 및 주택 시장 붕괴가 모두 주 전체의 재정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련한 세무 전문가로서 저의 풍부한 경험을 사기꾼들을 식별하고 주정부 수입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는 사기와 남용을 근절하는 데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의 미징수 세금을 주정부에 제공하여 교육, 공공 안전 및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지출하게 했습니다. 저의 활동은 사업계 지도자, 교사, 농장주, 고령자, 소방대원, 정부 개혁자, 간호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그들은 저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우리의 과세 제도를 보다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일하는 동안 소기업주에게 성공을 위해 필요한 툴을 제공하고,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할 21세기 산업을 유치하고, 고도로 숙련되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공급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조세 수입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ParkerforBOE.com을 방문하십시오. 제 이름은 Chris Parker이며,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JEROME E. HORTON
조세형평국 제4지구
P.O. Box 90932
Los Angeles, CA 90009
(310) 672-2992
jehorton@sbcglobal.net
www.voteforhorton.com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 부의장인 Jerome E. Horton은 조세형평국에서 22년 간의 경험을 쌓았으며,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회계, 재무, 부동산, 영업세법에 대한 Jerome의 배경으로 인해, 530억 달러를 조성하여 학교, 공공 안전 및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지출한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기관이라는 조세형평국의 명성이 제고되었습니다. Jerome은 최근에 공동 집행 범죄자 태스크포스를 확대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을 속이는 불법적인 사업체를 기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학대를 퇴치하기 위한 인신매매 반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Jerome은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형평국의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수백만 달러를 재징수하여 공공 서비스에 지출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를 보호했고, 조세 행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습니다. 전임 캘리포니아 주 의료 지원 커미셔너, 입법가, 캘리포니아 주 노동력 투자 위원회, 연합 직업 창출 위원회, 문화 기금 위원회의 위원인 Jerome은 그가 봉사하는 주민들에 관심을 갖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 부모 및 조부모인 Jerome은 우리가 연합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미래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험, 실력, 그리고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이 증명된 조세형평국 위원인 Jerome E. Horton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MARSHA FEINLAND
연방 상원의원
2124 Kittredge St., No. 66
Berkeley, CA 94704
(510) 845-4360
m_feinland@igc.org
www.feinlandforsenate.org

모든 미군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시 철수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미국의 부를 사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합시다. 5월 24일 이전에 평화자유당에 등록하십시오. 6월 8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Feinland 에게 투표하십시오.

CARLOS ALVAREZ
주지사
137 N. Virgil Ave., #203
Los Angeles, CA 90004
(323) 810-3380
carlos4gov@votepsl.org
www.votepsl.org

은행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C.T. WEBER
부지사
1403 Los Padres Way
Sacramento, CA 95831-2837
(916) 422-5395
ctwebervoters@att.net
ctweberforlieutenantgovernor.org

발의안 제14호는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무소속, 군소 정당 또는 기명 입후보자가 배제됩니다. 발의안 제14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DINA JOSEPHINE PADILLA
보험국장
7564 Watson Way
Citrus Heights, CA 95610
(916) 725-2673
dinajpadilla@gmail.com
www.padilla4insurancecommissioner.com

Dina Padilla가 보험국장이 되는 것은 보험업계에 최악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www.padilla4insurancecommissioner.com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감(초당파적 공직)

DANIEL M. NUSBAUM
공교육감
174 N. Almont Drive, Apt. 102
Beverly Hills, CA 90211
(310) 271-8048
danielm.nusbaum@sbcglobal.net

저는 40년 간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제가 공교육감으로 선출되면 캘리포니아 주 독립 공립학교, 학생 1인당 균등한 자금 지원, 지역사회 교사단, 교내 음악가 및 미술가, UC/CSU 공립학교 지원 교사, 고등학교 보육센터, 청소년을 돕는 고령자 프로그램을 제정할 것입니다.

TOM TORLAKSON
공교육감
P.O. Box 21636
Concord, CA 94521
(925) 682-9998
tom@tomtorlakson.com
tomtorlakson.com

지난 37년 간 교육은 저의 삶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교과 담임 교사, 코치, 입법가 및 부모로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로, 저는 낭비와 관리의 오류를 줄여서 절약한 자금을 새 교과서와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기 위해 재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직무 교육 프로그램, 멘토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는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거의 모든 *주요 공공 안전 단체*와 각 지역의 교과 담임 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인격이 중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신뢰, 존중, 책임, 돌봄, 훌륭한 시민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학보모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업 기술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California Task Force on Youth and Workplace Wellness의 의장 겸 설립자*인 저는 학교 교정에서 정크푸드를 금지하고 체육 필수 과목을 확대하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우리의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경험, 에너지 및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RANT McMICKEN
공교육감
116 2nd Street, #5
Pacific Grove, CA 93950-3044
(916) 792-5970
gmcmicken1@att.net
www.rescue-california-education.com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와 교육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우선, 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입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존경받고, 적극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교과 담임 교사를 차기 주 공교육감으로 선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녀, 교사, 학교를 지원하십시오. Grant McMicken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십시오.

GLORIA ROMERO
공교육감
P.O. Box 32398
Los Angeles, CA 90032
(323) 227-1474
electgloria2010@yahoo.com
gloriaromero.org

교육학 교수이고 주 상원의원인 Gloria Romero를 San Jose Mercury-News는 *"주의회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 개혁 옹호자"* 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닐 학교에 대해 학부모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학교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개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중퇴율이 가장 높고, 자녀들에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Gloria Romero를 공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교육제도를 너무 오래 운영해온 거대한 관료조직과 특별 이익 단체보다 자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Gloria Romero는 실패한 학교에 구조 조정을 하고, 비능률적인 관리자를 해고하고, 교과과정을 수정하고, 공립 헌장 학교로 다시 개교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학업 성과가 더 좋은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 법을 작성했습니다. Gloria는 더 안전한 학교, 읽기, 쓰기, 수학을 포함하는 기본 과목에 대한 새로운 강조,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규모 학급*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 기술 교육/훈련을 개선할 것입니다. Gloria Romero 교수는 미래의 교사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녀는 교사와 학교가 도전을 극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Gloria는 학급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관료주의로 인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변화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요구하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www.GloriaRomero.org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LYDIA A. GUTIÉRREZ
공교육감
P.O. Box 243
San Pedro, CA 90733
(310) 630-3736
lydiaforkids2010@gmail.com
www.lydiaforkids2010.com

30년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았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문 정치인들은 교육에 실패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Lydia A. Gutiérrez*는 교육과 지방정부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항공우주업계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학교들이 자녀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Lydia*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여 년 간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교사, UCLA 수학 프로젝트 X의 마스터 교사, 6년 간 항공우주업계 관리자, 산페드로 해안 이웃 위원회의 선출직 공직자, 예산 및 재정 위원회 의장, 공공 안전 위원회 부의장. *Lydia*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세금을 자녀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갱단과 성범죄자들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읽기, 수학, 과학 및 다른 핵심 과목들을 뛰어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연장하여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헌법, 미합중국의 주권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교육 내용에 대해 교과서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Lydia A. Gutiérrez*를 *캘리포니아 주 공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www.LydiaforKids2010.com

LARRY ACEVES
공교육감
(408) 288-8181
larry@larryaceves2010.com
www.larryaceves2010.com

저는 학과 담임 교사로서 과밀한 교실과 학생들에 대한 자원 부족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학교 교장일 때는 교사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수업을 개선했습니다. 공교육감일 때는 학군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유아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무료 의료 및 치과 클리닉을 설치했고, 학부모 교육 및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했고, 갱단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학급 규모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미술, 음악 및 기술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공교육감으로 15년 간 재직하는 동안, 7,000만 달러의 균형 예산을 기한 내에 편성했고, 수백 명의 교사와 직원들을 관리했고, 모든 학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올해의 교육감" 으로 지명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서 30여 년 간의 교육 경험을 쌓은 교육감입니다. 저는 제 기능을 못하는 우리 주의 교육 시스템에 상식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입후보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정치를 몰아낼 때입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교사들이 교육을 받은 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합시다.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ANE A. LENNING
공교육감
P.O. Box 4306
Huntington Beach, CA 92605-4306
(562) 596-4825
diane@lenning.com
http://www.dianelenningforcasuptofpublicinstruction2010.vpweb.com

우리의 학교를 *고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와 학부모들입니다! 주의회와 노동조합은 우리의 학교들을 *최고에서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부모의 권리와 지역의 결정권을 되찾읍시다! 지금은 *중퇴율을 줄여서* 연간 11억 달러의 범죄 관련 비용을 절약하고,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잘못 관리한 학군과 새 지역 학군을 감독하고, 뛰어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훈육이 부족한 학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때입니다! 주민/정부의 최소 능력 요건은 *자유의 횃불*을 각 세대로 전달하여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보존할 것입니다. 공립학교와 California Youth Authority에서 30여 년 간 개혁에 앞장 선 교육가인 Diane은 삶에 대한 선택, 학생들의 학업 성취, *취직*을 위해 *비판적 사고 기능*에 다시 중점을 둘 것입니다. Diane은 우리의 학교들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Diane Lenning은 *중등교육 석사학위*와 *I 등급 관리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Diane은 주 전역의 교육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법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평가와 목표 설정을 위해 주 전체의 교육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와 대학들이 미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을 때 학교를 다닌 5세대 캘리포니아 주민을 공교육감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자유 메달상* 수상자,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점수를 가장 많이 향상시켜 *전국 Eli Broad 상을 수상한 학군*의 교육가.
http://www.DianeLenningforCaSuptofPublicInstruction2010.vpweb.com http://www.DianeLenning.com
팩스: 562-430-7503 Diane@Lenning.com

입후보자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ALAMEDA COUNTY
1225 Fallon Street, Room G-1
Oakland, CA 94612
(510) 272-6973
www.acgov.org/rov

ALPINE COUNTY
99 Water Street
P.O. Box 158
Markleeville, CA 96120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COUNTY
810 Court Street
Jackson, CA 95642
(209) 223-6465
www.co.amador.ca.us

BUTTE COUNTY
25 County Center Drive, Suite 110
Oroville, CA 95965-3361
(530) 538-7761 또는 (800) 894-7761
http://clerk-recorder.buttecounty.net

CALAVERAS COUNTY
891 Mountain Ranch Road
San Andreas, CA 95249
(209) 754-6376
www.co.calaveras.ca.us

COLUSA COUNTY
546 Jay Street, Suite 200
Colusa, CA 95932
(530) 458-0500
www.colusacountyclerk.com

CONTRA COSTA COUNTY
555 Escobar Street
P.O. Box 271
Martinez, CA 94553
(925) 335-7800
www.cocovote.us

DEL NORTE COUNTY
981 H Street, Suite 160
Crescent City, CA 95531
(707) 465-0383
www.dnco.org

EL DORADO COUNTY
2850 Fairlane Court
P.O. Box 678001
Placerville, CA 95667
(530) 621-7480
www.co.el-dorado.ca.us/elections

FRESNO COUNTY
2221 Kern Street
Fresno, CA 93721
(559) 488-3246
www.co.fresno.ca.us/elections

GLENN COUNTY
516 W. Sycamore Street, 2nd Floor
Willows, CA 95988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elections/home_page.asp

HUMBOLDT COUNTY
3033 H Street, Room 20
Eureka, CA 95501
(707) 445-7678 또는 (707) 445-7481
www.co.humboldt.ca.us/election

IMPERIAL COUNTY
940 West Main Street, Suite 202
El Centro, CA 92243
(760) 482-4226
www.imperialcounty.net/elections

INYO COUNTY
168 N. Edwards Street
P.O. Box F
Independence, CA 93526
(760) 878-0224
www.inyocounty.us

KERN COUNTY
1115 Truxtun Avenue
Bakersfield, CA 93301
(661) 868-3590
http://elections.co.kern.ca.us/elections/

KINGS COUNTY
1400 W. Lacey Blvd.
Hanford, CA 93230
(559) 582-3211 ext. 4401
www.countyofkings.com/acr/elections/index.html

LAKE COUNTY
255 N. Forbes Street, Room 209
Lakeport, CA 95453-4748
(707) 263-2372
www.co.lake.ca.us

LASSEN COUNTY
220 S. Lassen Street, Suite 5
Susanville, CA 96130
(530) 251-8217
http://lassencounty.org/govt/dept/county_clerk/default.asp

LOS ANGELES COUNTY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8350
(800) 481-8683 또는 (562) 466-1310
www.lavote.net

MADERA COUNTY
200 West 4th Street, 1st Floor
Madera, CA 93637
(559) 675-7720
www.madera-county.com/elections

MARIN COUNTY
3501 Civic Center Drive, Room 121
San Rafael, CA 94903
P.O. Box E
San Rafael, CA 94913
(415) 499-6456
www.marinvotes.org

MARIPOSA COUNTY
4982 10th Street
P.O. Box 247
Mariposa, CA 95338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

MENDOCINO COUNTY
501 Low Gap Road, Room 1020
Ukiah, CA 95482
(707) 463-4371
www.co.mendocino.ca.us/acr

MERCED COUNTY
2222 M Street, Room 14
Merced, CA 95340
(209) 385-7541
www.mercedelections.org

MODOC COUNTY
204 S. Court Street
Alturas, CA 96101-0131
(530) 233-6200

MONO COUNTY
74 School Street, Annex I
P.O. Box 237
Bridgeport, CA 93517
(760) 932-5537
www.monocounty.ca.gov

MONTEREY COUNTY
1370-B South Main Street
P.O. Box 4400
Salinas, CA 93912
(831) 796-1499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COUNTY
900 Coombs Street, Suite 256
Napa, CA 94559
(707) 253-4321
www.countyofnapa.org

NEVADA COUNTY
950 Maidu Avenue
Nevada City, CA 95959
(530) 265-1298
www.mynevadacounty.com/elections

ORANGE COUNTY
P.O. Box 11298
Santa Ana, CA 92711
(714) 567-7600
www.ocvote.com

PLACER COUNTY
2956 Richardson Drive
Auburn, CA 95603
(530) 886-5650
www.placerelections.com

PLUMAS COUNTY
520 Main Street, Room 102
Quincy, CA 95971
(530) 283-6256
www.countyofplumas.com

RIVERSIDE COUNTY
2724 Gateway Drive
Riverside, CA 92507-0918
(951) 486-7200
www.voteinfo.net

SACRAMENTO COUNTY
7000 65th Street, Suite A
Sacramento, CA 95823-2315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net

SAN BENITO COUNTY
440 Fifth Street, Room 206
Hollister, CA 95023-3843
(831) 636-4016
www.sbcvote.us

SAN BERNARDINO COUNTY
777 E. Rialto Avenue
San Bernardino, CA 92415
(909) 387-8300
www.sbcrov.com

SAN DIEGO COUNTY
5201 Ruffin Road, Suite I
San Diego, CA 92123
(858) 565-5800
www.sdvote.com

SAN FRANCISCO COUNTY
City Hall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48
San Francisco, CA 94102
(415) 554-4375
www.sfelections.org

SAN JOAQUIN COUNTY
44 N. San Joaquin Street, Suite 350
Stockton, CA 95202
(209) 468-2885
www.sjcrov.org

SAN LUIS OBISPO COUNTY
1055 Monterey Street, D-120
San Luis Obispo, CA 93408
(805) 781-5228
www.slocounty.ca.gov/clerk

SAN MATEO COUNTY
40 Tower Road
San Mateo, CA 94402
(650) 312-5222
www.shapethefuture.org

SANTA BARBARA COUNTY
130 E. Victoria Street, Suite 200
P.O. Box 159
Santa Barbara, CA 93102
(800) SBC-VOTE
(805) 568-2200
www.sbcvote.com

SANTA CLARA COUNTY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408) 299-VOTE 또는 (866) 430-VOTE
www.sccvote.org

SANTA CRUZ COUNTY
701 Ocean Street, Room 210
Santa Cruz, CA 95060-4076
(831) 454-2060
www.votescount.com

SHASTA COUNTY
1643 Market Street
Redding, CA 96001
(530) 225-5730
www.elections.co.shasta.ca.us

SIERRA COUNTY
P.O. Drawer D
Downieville, CA 95936
(530) 289-3295
www.sierracounty.ws

SISKIYOU COUNTY
510 N. Main Street
Yreka, CA 96097
(530) 842-8084 또는
(888) 854-2000 ext. 8084
www.co.siskiyou.ca.us/clerk/index.htm

SOLANO COUNTY
675 Texas Street, Suite 2600
Fairfield, CA 94533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

SONOMA COUNTY
435 Fiscal Drive
P.O. Box 11485
Santa Rosa, CA 95406-1485
(707) 565-6800 또는 (800) 750-VOTE
www.sonoma-county.org/regvoter

STANISLAUS COUNTY
1021 I Street, Suite 101
Modesto, CA 95354-2331
(209) 525-5200
www.stanvote.com

SUTTER COUNTY
1435 Veterans Memorial Circle
Yuba City, CA 95993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

TEHAMA COUNTY
444 Oak Street, Room C
P.O. Box 250
Red Bluff, CA 96080
(530) 527-8190 또는 (866) 289-5307
www.co.tehama.ca.us

TRINITY COUNTY
11 Court Street
P.O. Box 1215
Weaverville, CA 96093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

TULARE COUNTY
5951 S. Mooney Blvd.
Visalia, CA 93277
(559) 624-7300
www.tularecoelections.org

TUOLUMNE COUNTY
2 S. Green Street
Sonora, CA 95370-4696
(209) 533-5570
www.tuolumnecounty.ca.gov

VENTURA COUNTY
800 S. Victoria Avenue
Ventura, CA 93009-1200
(805) 654-2664 또는 (805) 654-2781
http://recorder.countyofventura.org/elections.htm

YOLO COUNTY
625 Court Street, Room B05
Woodland, CA 95695
(530) 666-8133
www.yoloelections.org

YUBA COUNTY
915 8th Street, Suite 107
Marysville, CA 95901-5273
(530) 749-7855
http://elections.co.yuba.ca.us

발의안 제13호

2007 - 2008 연도 정기회기의 상원 헌법 개정안 제4호(결의안 제115장, 2008년 법령)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한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XIII A절 2조
개정 발의안

제2조. (a) "총 현금 가치"란 1975 - 76년 세금 법안의 "총 현금 가치" 규정에 따라 카운티 세액 사정관이 부동산을 평가한 가치, 또는 1975년 이후에 구입 또는 신축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의미한다. 1975 - 76년까지 총 현금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부동산은 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신축"에는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을 당한 후에 개축한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재난을 당하기 전의 공정 시장 가치와 유사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의 목적상*, "신축"이라는 용어에는 ~~그러한 개축 또는 개량 후 첫 15년 동안 지진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보강 석조 내력벽으로 건설된 구조물에 대한~~ *주의회의 정의에 따라 내진 보강 구조체의 시공 또는 개축* ~~또는 개량~~*에 해당되는 기존의 구조물*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회는 제XIII절 3조 (k)항 및 시행 중인 법률에 의해 주택소유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거주하는 55세가 넘은 사람은 해당되는 상황과 주의회가 정한 정의 및 절차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준 연도의 재산 가치((b)항에 의해 허용되는 가치의 조정 포함)를 원래 부동산의 매각 후 2년 이내에 그 사람이 같은 카운티 내에서 주 거주지로 매입 또는 신축했고 가치가 원래 부동산 이하인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55세가 넘은 사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를 넘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 조의 목적상, "대체 주택"이란 건물, 구조물, 또는 다른 주거지를 의미하며, 부동산 또는 동산, 그리고 그러한 재산이 위치한 토지가 포함된다. 이 조의 목적상, 2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은 2개의 별도의 단독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목은 1986년 11월 5일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한 대체 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주의회는 각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경계 내에 있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지역 기관들과 상의한 후에 기준 연도 가치의 이전과 관련이 있는 이 항의 조항을 대체 주택이 해당 카운티에 있고 원래 부동산이 이 주 내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한 조례를 채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목의 목적상, "영향을 받는 지역 기관"이란 매년 재산세 수입을 분배 받는 시, 특별구,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을 의미한다. 이 목은 카운티가 기준 연도 가치의 이전과 관련이 있는 이 항의 조항을 채택한 날짜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한 대체 주택에 ~~적용될 것이나~~ *적용되나*, 1988년 11월 9일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한 대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주의회는 기준 연도 가치를 55세가 넘은 주택소유자의 원래 부동산에서 대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 항의 조항을 심각한 장애가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목의 발효일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한 대체 주택으로 제한된다.

(b) 총 현금 가치 기준에는 과세 관할구역에 속한 지역에 대한 1년에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인플레이션 비율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에 나타난 감소를 매년 반영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상당한 손상, 파괴, 또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c) (a)항의 목적상, 주의회는 "신축"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1) 설비형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의 시공 또는 추가

(2) 이 목의 발효일 이후에 시공 또는 설치하는 주의회가 정의한 소방 살수 시스템, 기타 소방 시스템, 화재 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배출구 개선

(3)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에 보다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의 발효일 이후에 주택소유자 세금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분 또는 구조체에 대해 실시하는 시공, 설치 또는 변경

~~(4) 이 목의 발효일 이후에 기존의 건물에 대해 실시하는 지진 위험 완화 기술을 사용한 내진 보강 개량(들)을 위한 시공 또는 설치. 주의회는 적격 개량을 정의한다. 이 제외사항은 (a)항 1목의 마지막 문장에 의해 제외시킬 자격이 있는 지진 안전 개축 또는 개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4) 장애인이 건물에 보다 쉽게 출입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의 발효일 이후에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분 또는 구조체에 대해 실시하는 시공, 설치, 철거 또는 변경

(d) 이 조의 목적상, "소유권의 변경"이라는 용어에는 토지 수용권 소송, 공공단체에 의한 취득, 또는 역유상 수용(inverse condemnation)

이라는 판결을 받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대체된 부동산으로부터 강제 퇴거된 사람이 유사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한 부동산은 규모, 유용성 및 기능이 비슷하거나,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해 강제 퇴거된 사람의 이사에 적용되는 주의회가 정한 주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원래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 *이* 항은 1975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될 것이다~~ *적용되나*, 이 항의 조항들이 발효된 후에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친다*.

(e) (1) 이 조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에 의해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그러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 또는 신축한 같은 카운티 내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3)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198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신축한 유사 대체 부동산, 그리고 1985 - 86 회계연도와 그 후의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적용된다*.

(3) (1)목에 의해 허용되는 같은 카운티 내에 있는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 이전에 추가하여, 주의회는 각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내에 있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지역 기관들과 상의한 후에 이 주의 다른 카운티 내에 있고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에 의해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이의 이전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카운티 내에 있고 이 부동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래 부동산이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또는 신축했고 그 가치가 원래 부동산 이하인 유사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목에 의해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범위와 금액은 (a)항에 의해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범위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목의 목적상, "영향을 받는 지역 기관"이란 매년 종가 재산세 수입을 분배 받는 시, 특별구,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을 의미한다. 이 목은 1991년 10월 20일 이후에 발생했고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에 의해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 또는 신축하는 유사 대체 부동산, 그리고 1991 - 92회계연도와 그 후의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적용된다*.

(f) (e)항의 목적상:

(1) 재난이 발생하기 직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은 부동산은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손상에는 재난으로 인한 접근 제한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감소가 포함된다.

(2) 대체 부동산의 규모, 유용성 및 기능이 원래 부동산과 유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격이 원래 부동산이 재난을 당하기 전의 공정 시장 가치와 유사한 경우에는 대체 부동산이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g) (a)항의 목적상, "매입" 및 "소유권의 변경"이라는 용어에는 197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했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매입 또는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배우자, 또는 사망한 이전자의 생존 배우자의 유용한 사용을 위해 피신탁자에게 이전, 또는 이러한 신탁의 피신탁자가 신탁설정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2) 배우자의 사망 시 발효되는 배우자에 대한 이전

(3) 재산 처리 동의 계약서나 결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 명령과 관련하여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이전

(4) 단지 배우자 사이에 공동 소유자의 권리 발생, 이전, 또는 종료

(5) 재산 처리 동의 계약서나 결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 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조직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와 교환하여 법적 조직체의 재산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분배

(h) (1)(a)항의 목적상, "매입" 및 "소유권의 변경"이라는 용어에는 주의회가 정의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입 또는 이전 시 이전자의 주 거주지에 대한 매입 또는 이전, 그리고 주의회가 정의한 다른 모든 부동산에 대한 총 현금 가치 중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첫 백만 달러 ($1,000,000)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매입 또는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은 자발적인 이전과 법원 명령으로 인한 이전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적용된다*.

(2) (A) 이 목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효되는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매입 또는 이전부터 (B)호에 따라 적용되는 (1)목에 규정된 제외사항은 또한 조부모의 자녀로 자격이 인정되는 그 손자 손녀(들)의 모든 부모가 매입일 또는 이전일에 전에 사망한 경우 주의회가 정의한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 사이의 부동산 구입 또는 이전에 적용되며,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목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다.

(B) 또한 피이전자인 손자 손녀(들)이 (1)목에 의해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던 다른 매입 또는 이전을 통해서 주 거주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경우, 주 거주지의 매입 또는 이전은 (A)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 (1)목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던 매입 또는 이전에 의해 손자 손녀(들)에게 이전된 부동산

(주 거주지 제외)의 총 현금 가치와 앞의 문장의 결과로 제외될 자격을 상실한 주 거주지의 총 현금 가치는, (A)호의 목적상, (1)목에 명시된 ~~백만 달러~~ *백만 달러*($1,000,000)의 총 현금 가치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포함된다.

(i) (1) 이 조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2)목에 정의된 적격 오염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모두는 아님)가 적용 ~~될 것이라고~~ *된다*고 규정한다.

(A) (i) (ii)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적격 오염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b)항에 허가된 대로 조정된)는 대체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적격 오염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이하이고, 이 항목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이 오염되지 않았고 같은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적격 오염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 또는 신축하는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적격 오염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는 다른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그 카운티 내에 있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지역 기관들과 상의한 후에 기준 연도 가치의 카운티 간 이전을 허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그 다른 카운티 내에 있는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

(ii) 이 호는 적격 오염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5년 이내에 취득 또는 신축되는 대체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B) 적격 오염 부동산에 대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그 결과 구조물이 상당히 손상되는 경우, "신축"이라는 용어에는 환경 문제를 개선한 후에 실시하는 상당히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 또는 적격 오염 부동산에서 철거된 구조물을 대체하기 위한 구조물의 시공이 포함되지 않으나, 단 보수 또는 대체되는 구조물이 크기, 유용성 및 기능의 측면에서 원래 구조물과 유사해야 한다.

(2) 이 항의 목적상, "적격 오염 부동산"이란 다음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의미한다.

(A) 독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의 존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진 환경 문제의 결과로, 또는 그러한 환경 문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 주거용 부동산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비주거용 부동산(단, 부동산을 취득 또는 건축할 때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 또는 (3)목에 기술된 관련 개인 또는 사업체가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 이 호의 목적상, 환경 문제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건강 유해성의 결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당한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환경 문제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건강 유해성의 결과로 건강에 해롭고 점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또는 연방정부에 의해 독성이 있거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또는 환경 정화 부지로 지정된 부지에 위치한 부동산

(C) 환경 정화 활동이 완료되기 전에 구조물(들)이 있었고 그 구조물(들)이 환경 정화 활동의 결과로 상당히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

(D) 부동산에 대한 환경 문제 또는 환경 정화와 관련하여, 주관 정부 기관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참여 또는 묵종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A)에 기술된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

(3) 부동산의 소유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개인 또는 사업체와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참여 또는 묵종했다고 가정하나, 이에 반박할 수 있다.

(A) 그 소유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또는 형제 자매

(B) 그 사업체의 모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C) 그 사업체의 소유자 또는 경영권이 있는 사람

(D) 그 사업체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사업체

소유자가 이러한 가정을 반박하지 못하면 (1)목의 (A) 또는 (B)호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평가관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고, 평가관은 그러한 가정에 대한 반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관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는다.

(4) 이 항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건축한 대체 부동산과 이 날짜 이후에 실시한 부동산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j) 달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1988년 11월 1일에 채택된 이 조에 대한 개정은 발생된 소유권의 변경과 완료된 신축 공사에 대해서 개정 조항의 발효일 후에 발효~~될 것이다~~ *된다*. 달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1988년 11월 1일에 채택된 이 조에 대한 개정은 발생된 소유권의 변경과 완료된 신축 공사에 대해서 개정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다~~ *된다*.

발의안 제14호

2009 - 2010 연도 정기회기의 상원 헌법 개정안 제4호(결의안 제2장, 2009년 법령)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조항들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첫째—이 법안은 "상위 2인 입후보자 개방형 예비선거법"으로 호칭 및 인용할 수 있다.

둘째—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 및 선언한다.

(a) 목적. 상위 2인 입후보자 개방형 예비선거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자신이 선택한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이 채택한다. 이 법의 의도는 주의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제정한 법률을 병용하여 아래의 기술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b) 상위 2인 입후보자 개방형 예비선거.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할 자격을 얻은 모든 등록 유권자는 모든 주 선거 및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신이 선택한 입후보자에 투표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특정한 주 및 연방의회 공직에 입후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개방형 예비선거에서 선정한 상위 2인의 입후보자가 총선거에 진출하고, 개방형 총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입후보자가 당선된다.

(c) 개방형 유권자 등록. 모든 유권자는 등록할 때 우선 선택한 정당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어떤 유권자도 선택하는 정당의 공개 또는 비공개에 근거하여 주 전체 헌법상 공직,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에 대한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에 자신이 선택한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가입한 정당에 표시하는 기존의 유권자 등록 절차에서는 새 등록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우선 선택하는 정당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d) 개방형 입후보자 공개. 모든 공직 입후보자는 입후보할 때 우선 선택한 정당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우선 선택한 정당은 예비선거 및 총선거 투표용지에 입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기재된다. 우선 선택한 정당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입후보자의 이름은 예비선거 및 총선거 투표용지에 "우선 선택 정당 없음"이라는 표시와 함께 기재된다. 주 또는 연방의회 공직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정당 우선 선택은 표시한 정당이 그 입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의미하지 않으며, 그 공직에 입후보하는 어떤 사람도 예비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정당의 공식 입후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정당의 자유. 이 법의 어떤 조항도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조직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과 사적으로 제휴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정당이 주 선출 공직 또는 연방의회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거 비용을 기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당은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고,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지명 하는 공직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또는 정당이 선택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입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주정부가 실시하는 예비선거는 제외된다. 또한 정당은 정당 고위직(중앙 위원회 위원, 대통령 선거 대의원, 정당 간부 포함)을 선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등록 시 그 정당에 대한 우선 선택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 정당 고위직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f) 대통령 예비선거. 이 법은 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된 현행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법은 Washington State Grange v. Washington State Republican Party (2008) 128 S.Ct. 1184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한다. 각 정당은 등록 시 그 정당에 대한 우선 선택을 공개하는 유권자에 대해 대통령 예비선거를 폐쇄할 권리 또는 우선 선택 정당을 공개하지 않고 등록하는 유권자를 포함시키도록 대통령 예비선거를 개방할 권리를 보유한다.

셋째—이 법의 제II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a) *유권자 지명 예비선거는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의회 및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모든 유권자는 입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공개하는 정당 우선 선택과 상관없이 연방의회 및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유권자 지명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나, 단 다른 방법으로 해당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자격을 얻어야 한다. 연방의회 또는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유권자 지명 예비선거에서 상위 2위 이내의 득표를 한 입후보자는 정당 우선 선택에 상관없이 차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경합해야 한다.*

(b) 제6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의회 또는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는 정당을 우선 선택하거나 우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법령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 공직에 대한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정당 또는 정당 중앙 위원회는 유권자 지명 예비선거에서 연방의회 또는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이 항은 정당 또는 정당 중앙 위원회가 연방의회 또는 주 선출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추천, 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정당 또는 정당 중앙 위원회는 (a)항에 규정된 것처럼 상위 2위의 득표를 한 사람들 중 하나인 입후보자가 아닌 정당에서 선호하는 입후보자를 유권자 지명 공직에 대한 총선거에 참여시키기를 권리가 없다.

(c) 주의회는 ~~당파적 공직~~ *대통령 입후보자, 그리고 정당 및 정당 중앙 위원회*에 대해 ~~예비선거~~ *당파적* 선거를 규정하고, 여기에는 총무처장관이 미국 전역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확인한 입후보자들, 그리고 청원에 의해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입후보자들이 미국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개방형 대통령 예비선거 포함되나, 불출마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퇴한 입후보자는 제외된다.

~~(b)~~

(d) (c)항에 따라 당파적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그 공직에 대한 총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예비선거에서 그 정당의 입후보자들 중에서 최고의 득표를 한 입후보자를 총선거 투표용지에 기재할 자격이 거부되지 않는다.

넷째—이 법의 제II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a) *공교육감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 학교, 카운티 및 시 공직은 초당파적이다.

(b) 정당 또는 정당 중앙 위원회는 초당파적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추천, 지원 또는 반대할 수 없다~~ *지명해서는 안되고, 입후보자의 정당 우선 선택은 초당파적 공직에 대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이 법안은 2011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발의안 제15호

하원 법안 제583호(2008년 법령, 제735장)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10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한다.

이 발의 법안은 선거법에 조항들을 추가하고, 정부법의 조항들을 추가 및 폐지하고, 세입과세법의 조항들을 추가 및 폐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제7장(제20600조에서 시작)을 선거법 제20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7장. 공정 선거 기금

제20600조. (a) 정부법 제82038.5조에 정의된 각 로비 회사, 정부법 제82039조에 정의된 각 로비스트, 그리고 정부법 제82039.5조에 정의된 각 로비스트 고용자는 2년마다 칠백 달러($700)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총무처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각 로비스트가 납부하는 이십오 달러($25)의 각 수수료는 일반 기금에 예치하고, 지출이 승인되는 경우, 정부법 제9편 6장 1절(제86100조에서 시작)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각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은 정부법 제91133조에 따라 제정된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한다. 이 조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법 제86106조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는 짝수 연도들에 납부할 수 있다.

(b) 총무처장관은 이 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반영하여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정부법 제85300조를 폐지한다.

~~제85300조. 선출직 공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은 공적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되고 입후보자는 이를 수령해서는 안된다.~~

제3조. 정부법 제86102조를 폐지한다.

~~제86102조. 이 장에 의해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로비 회사와 로비스트 고용자에게는 등록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각 로비스트에 대해 매년 이십오 달러($25)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제12장(제91015조에서 시작)을 정부법 제9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2장. 2008년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

제1절. 일반사항

제91015조. 이 장은 2008년 캘리포니아 주 공정선거법으로 호칭 및 인용할 수 있다.

제91017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현재의 선거운동 자금 조달 제도는 끊임없는 모금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후보자에게 부담을 주며, 따라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시간이 감소한다.

(b) 현재의 선거운동 자금 조달 제도는 부유하지 않은 유권자와 입후보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독점할 여유가 있는 입후보자들로 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 발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위축된다.

(c) 현재의 선거운동 자금 조달 제도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패, 최선의 경우라도 이해의 상충이라는 공중의 인식을 유발하고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한다.

(d) 기존의 임기 제한은 유지하기 쉬운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도 차기 선거를 위한 모금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e) 현재의 선거운동 자금 조달 제도는 민주적 절차에서 유권자와 입후보자가 의견을 발표할 수정 제1조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고, 유권자들이 모든 입후보자의 발언을 들을 수정 제1조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며, 정치적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이라는 수정 제1조의 핵심 가치를 저해한다.

(f) 주민들은 로비스트의 헌금을 전자식으로 보고하는 캘리포니아 주 시스템의 무결성과 로비스트

공개 프로그램을 시행할 미래의 총무처장관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는 총무처장관을 선출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g) 공정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비용을 완전히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 중인 주에서는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특히 여성과 소수민족) 전체적인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

제91019조. 주민들은 총무처장관직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정 선거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장을 제정한다.

(a) 대규모 헌금이 주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불식

(b) 개인이 입후보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서 부를 제거

(c)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의 다양성 증가

(d) 입후보자는 모금에 주력하는 대신 정책 문제에 전념하고, 공직보유자는 직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

(e) 실제로 부패가 발생하거나 공중이 부패가 있다고 인식하는 위험을 축소하고 정부 및 선거 절차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강화

(f) 로비스트 고용자가 미래의 총무처장관과 로비스트 공개 프로그램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

(g) 적격 입후보자가 선택 및 사용 가능한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적 자금으로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

제91021조. 주민들은 다음의 목적을 추가로 달성하기 위해 이 장을 제정한다.

(a) 정치 과정에 대한 평등하고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

(b)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

(c) 자신을 선출하는 유권자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책임 증가

(d)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헌금, 지출, 정치적 광고 자금원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제2절. 1974년 정치개혁법의 적용 가능성

제91023조. 이 법에 의해 특별히 대체되지 않는 한, 1974년 정치개혁법의 정의 및 조항들은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제3절. 정의

제91024조. "주소"란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우편주소를 의미한다.

제91025조. 이 장의 목적상, "입후보자"란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총무처장관직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27조. "조정 지출"이란 총무처장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입후보자의 요청이나 제안, 또는 특별한 양해에 따라, 그가 통제하는 위원회, 또는 입후보자나 그가 통제하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대리인과 협력, 자문 또는 협조하는 사람이 지급

(b) 방송, 또는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 또는 입후보자나 그가 통제하는 위원회의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면, 그래픽 또는 다른 형태의 선거운동 자료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전파, 배포 또는 재발행하는 사람이 지급

(c) 자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의 대리인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입후보자의 계획, 프로젝트 또는 필요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지급

(d) 자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예비선거 및 총선거에서 지급을 하는 사람이 입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의 구성원, 직원, 모금자 또는 대리인이 집행 또는 정책 입안을 하는 직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경우, 그 사람이 지급

(e) 자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정책 입안 또는 자문 직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또는 자금을 지급하는 예비선거 및 총선거와 같은 예비선거 및 총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총무처장관직 선거에 대한 선출을 위한 지명 또는 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 또는 정책 입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이 지급

(f) 자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른 입후보자들과 같은 지명 또는 선출을 추진 중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언급하는 입후보자에게 같은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비각료 직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지급

제91028조. 비참여 입후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출"이란 그 입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추가하고 그 입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독립 선거운동 지출로 간주되는 지출을 차감한 지출 금액을 의미한다. 참여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용어가 그 입후보자가 수령한 공정 선거 자금 금액에 그 입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추가하고 그 입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독립 선거운동 지출로 간주되는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91029조. "조직체"란 개인이 아닌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제91031조. "초과 지출 금액"이란 비참여 입후보자가 동일한 공직에 입후보하는 참여 입후보자에게 제공되는 공정 선거 자금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의무가 있는 자금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91033조. "예비 기간"이란 예비선거 18개월 전에 시작되고 적격 기간의 마지막 날에 종료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비 기간은 적격 기간 전에 시작되나 적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1035조. "총선거 선거운동기간"이란 예비선거 익일에 시작되어 총선거 당일에 종료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91037조. "무소속 입후보자"란 총선거에서 투표 지위가 부여된 정당을 대표하지 않고 총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었거나 이를 추진 중인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39조. "독립 선거운동 지출"이란 법인, 정당 위원회, 정치 위원회, 또는 정치 활동 위원회, 또는 제84605조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직체가 예비선거 전 45역일 동안 또는 총선거 전 60역일 동안 이천오백 달러($2,500)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출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명백하게 지지하거나, 또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입후보자의 이름과 모습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제91043조. "비참여 입후보자"란 투표용지에 기재되나 공정 선거 선거운동 자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입후보자, 또는 투표용지에 기재되고 공정 선거 선거운동 자금을 신청했으나 이 자금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45조. "공직 적격 정당"이란 주지사 또는 총무처장관 지명자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10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을 의미한다.

제91046조. "공직적격입후보자"란 "공직적격 정당에서 지명을 받으려는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49조. "참여 입후보자"란 공정 선거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후보자는 예비선거 및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정 선거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91051조. "정당 입후보자"란 투표 지위가 부여되고 총선거 지명자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선거를 개최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53조. "실적 적격 입후보자"란 공직 적격 입후보자 또는 공직 적격 입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수의 적격 헌금을 모금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증명한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무소속 입후보자도 실적 적격 입후보자로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제91055조. "소액 현금"이란 공정 선거 현금카드에서 인출하여 각각 이십오 달러($25) 이하의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1일 당 일백 달러($100) 이하의 현금 금액을 의미한다.

제91059조. "예비선거 선거운동 기간"이란 예비선거 120일 전에 시작하여 예비선거 당일에 종료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91061조. "적격 입후보자"란 공직 적격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려는 입후보자를 의미한다.

제91063조. "적격 헌금"이란 지정된 적격 기간 동안 공정 선거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는 입후보자가 자신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수령한 오 달러($5)의 헌금을 의미한다.

제91065조. "적격 기간"이란 입후보자들이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 적격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정당 입후보자의 경우 예비선거 270일 전에 시작하여 예비선거 90일 전에 종료되고, 무소속 입후보자로 선거에 참여하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연도 1월 1일 이후에 언제든지 시작하여 180일 동안 지속되나, 총선거 90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91067조. "착수 자금 헌금"이란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가 예비 기간 동안 기부한 일백 달러($100) 이하의 헌금을 의미한다.

제4절. 공정 선거 자격

제91071조. (a) 공직 적격 입후보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예비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입후보자는 예비 기간 및 적격 기간 동안 이 법의 모든 요건(착수 자금 헌금, 적격 헌금, 공정 선거 자금, 그리고 제91123조에 규정된 정당 자금을 제외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사적 헌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요건 포함)을 준수했고 준수할 것이라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적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적격 헌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공직 적격 입후보자는 최소한 7,500건의 적격 헌금을 모금해야 한다.

(B) 각 적격 헌금은 기부자에게 발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고, 입후보자는 자신이 입후보 신고서를 제출한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소에 영수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서명, 정자 이름, 주소, 날짜, 헌금을 수령한 입후보자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영수증은 기부자의 서명에 의해 기부자가 적격 헌금의 목적이 해당 입후보자가 공정 선거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 헌금이 단지 기부자가 이 공직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적격 헌금이라는 것, 그리고 그 헌금을 강요에 의해 제공하지 않았고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C) 적격 헌금으로 제출되었으나 서명되고 완전하게 작성된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 헌금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D) 현금, 수표, 또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계좌 앞으로 발행된 머니오더의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오 달러($5) 적격 헌금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계좌에 예치된다.

(E) 모든 적격 헌금의 서명된 영수증은 입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는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소로 보내고,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수령한 적격 헌금 자금의 총액에 대한 수표 또는 입후보자 선거운동 계좌로부터 발행된 다른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에는 적격 헌금 영수증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입후보자가 아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동봉한 수표 또는 다른 증서의 금액이 입후보자가 수령한 오 달러($5) 적격 헌금의 총액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입후보자의 서명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카운티 유권자 등록소는 이러한 수표 또는 다른 증서를 위원회에 전송해야 한다.

(b)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입후보자는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입후보자가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고 이 법에 기술된 모든 참여 요건을 이행했고 또한 이행할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2) 예비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여 정당 입후보자였던 입후보자가 소속된 각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경합한 입후보자들 중에서 최고의 득표를 하여 그 정당의 지명을 획득했다.

제91073조. (a) 적격 입후보자는 같은 공직에 대한 공직 적격 입후보자에 대해 요구하는 적격 헌금 건수의 최소한 이분의 일을 모금해야 한다. 적격 입후보자는 공직 적격 입후보자에 대해 요구하는 적격 헌금 금액의 2배를 모금하여 지지 기반이 넓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실적 적격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입후보자는 위원회에 본인이 이 법의 모든 요건을 준수했고 또한 준수할 것이라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예비선거에서 경합하지 않는 무소속 입후보자는 공직 적격 입후보자에 대해 요구하는 적격 헌금의 2배를 모금하여 실적 적격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후보자에 대한 적격 기간은 선거 연도 1월 1일 이후에 어느 때든지 시작하여 180일 동안 지속되나, 단 총선거 90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무소속 입후보자는 적격 헌금 모금을 시작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는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했고 또한 준수할 것이라는 선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1075조.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입후보자가 참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할 이 법의 제정일 전에 입후보자가 민간 자금으로부터 헌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실시되는 최초의 선거 기간 동안에는 참여 입후보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단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수령했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민간 자금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그러한 자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했다.

(b) 그러한 자금을 별도에 계좌에 입금하고 이전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다.

(c) 그러한 자금을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제91077조. 예비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참여 입후보자는 혜택을 계속 받는 것에 상관없이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91079조. (a) 공정 선거 혜택에 참여할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 자격을 얻은 참여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91123조에 규정된 입후보자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민간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b) 공정 선거 혜택에 참여할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 자격을 얻은 참여 입후보자는 적격 기간과 예비선거 및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른 입후보자, 모든 정당 또는 다른 정치위원회에 기부금을 요청 또는 수령해서는 안된다.

(c) 헌금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1071조 (a)항 (2)목 (D)호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제공하지 않은 적격 헌금 또는 착수 자금 헌금을 받는 참여 입후보자는 해당 처벌에 추가하여 기부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헌금의 전체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해야 한다.

(d) 예비선거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여 입후보자는 소액 현금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 비용을 제91137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 위원회가 발급하는 "공정 선거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해야 한다.

(e) 참여 입후보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완전한 선거운동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위원회, 지방조세국, 또는 모든 법집행기관이 실시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91081조. (a) 예비선거와 총선거 기간 동안, 각 참여 입후보자는 단일 선거운동 계좌를 통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재무 활동을 해야 한다.

(b) 제85201조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후보자는 그 입후보자가 참여 입후보자가 아니었던 이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불 순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a)항에 기술된 선거운동 계좌가 아닌 다른 선거운동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c) (b)항에 기술된, 이전의 선거운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다른 선거운동 계좌"에 예치된 헌금은 현재의 선거운동에 대한 "헌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한 헌금은 선거일 이후 6개월 간에 한해서 모금해야 한다.

제91083조. (a) 참여 입후보자는 공정 선거 자금을 직접적인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b) 참여 입후보자는 공정 선거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 관련 법집행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변호 비용 또는 벌금

(2)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간접적인 선거운동 목적:

(A) 입후보자의 개인 생활비 또는 입후보자나 입후보자 가족에 대한 보수

(B) 입후보자의 개인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C) 다른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위원회, 정당 위원회 또는 다른 정치 위원회에 대한 헌금 또는 대부

(D) 독립적인 선거운동 비용 지출

(E) 1인 당 이십오 달러($25)를 초과하는 선물

(F) 보상 가치를 받지 않는 지불 또는 이체

제91085조. (a) 참여 입후보자 자격을 얻으려는 입후보자 또는 그 입후보자의 성인 가족이 착수 자금으로 기부하는 개인 자금은 기부자 당 최대 일백 달러($1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개인 자금은 입후보자가 기부하는 1건의 오 달러($5) 헌금, 그리고 입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하는 1건의 오 달러($5) 헌금을 제외하고 적격 헌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1087조. (a)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는 입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적 헌금은, 적격 헌금과 제91123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당이 제공하는 제한된 헌금을 제외하고, 입후보자가 적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후보하는 선거구에 정당하게 등록한 유권자가 기부하는 착수 자금 헌금뿐이다.

(b) 착수 자금 헌금은 기부자 당 일백 달러($1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는 입후보자가 받는 착수 자금 헌금의 총액은 칠만 오천 달러($75,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착수 자금 헌금의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서명, 정자 이름, 주소 및 우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에 기술된 영수증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d) 착수 자금은 예비 기간과 적격 기간 동안에만 지출해야 한다. 착수 자금은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지출해서는 안되나, 이러한 기간이 입후보자의 적격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미지출 착수 자금은 위원회에 반납하여 공정 선거 자금에 예치해야 한다.

(e)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는 입후보자들은 적격 기간이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든 착수 자금 헌금과 지출을 위원회에 공개한다.

(2) 입후보자가 예비 기간 동안 모금한 착수 자금 헌금 중에서 착수 자금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반납하여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시킨다.

제91091조. 선거에서 경합하는 참여 입후보자들은 위원회가 공표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공개토론회에 예비선거 경선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1회, 그리고 총선거 경선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2회의 참여할 것에 동의한다.

제91093조. (a) 입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는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소는 입후보자가 공정 선거 혜택을 신청한 후 5 업무일 이내에 그 입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인증해야 한다. 입후보자가 이 법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공정 선거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b) 입후보자의 인증 요청서에는 입후보자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회계 담당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한다.

(c) 이러한 인증에 대해서는 신속 사법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카운티 유권자 등록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5절. 공정 선거 혜택

제91095조. (a) 예비선거와 총선거에 대해 공정 선거 자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입후보자는:

(1) 위원회로부터 제91099조에 규정된 금액의 공정 선거 자금을 각 선거에 대해 수령한다. 제91081조에 따라 특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배정된 이 자금은 그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실적 적격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의 효과적인 지출을 초과하는 해당 선거 입후보자의 효과적인 지출과 일치하는 추가 공정 선거 자금을 수령한다.

(b) 참여 실적 적격 입후보자가 독립 선거운동 지출과 일치하고 비참여 입후보자의 지출을 초과하기 위해 수령하는 자금의 최대 총액은 특정한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91099조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 자본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91095.5조. (a) 특정한 예비선거에서 한 입후보자의 지출이 다른 당의 예비선거에서 그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과 경쟁하기 위한 지출은 그 입후보자의 효과적인 지출이 제91095조의 목적을 위해 지출을 하는 입후보자의 지출보다 적은 경우 그 입후보자에 대한 독립 선거운동 지출로 간주된다.

(b) 위원회는 제91095조의 목적상 두 사람 이상의 입후보자의 이름 또는 모습을 알리기 위한 지출의 몫을 배정하는 규정을 공표한다.

(c) 총선거 기간 동안 지출한다는 계약, 약속 또는 약정과 같은 신용의 연장을 초래하는 총선거 기간 전의 지출은 총선거 기간이 시작될 때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1097조. (a)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유자격 적격 또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는 카운티 유권자 등록소가 그 입후보자를 참여 입후보자로 인증하는 날짜 또는 예비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중에서 더 늦은 때에 그 입후보자에게 해당되는 공정 선거 자금을 수령한다.

(b) 유자격 적격 또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는 그 입후보자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용할 공정 선거 자금을 예비선거 결과 인증 후 2 업무일 이내에 수령한다.

제91099조. (a)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유자격 입후보자의 경우:

(1)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공직 적격 입후보자에 대한 공정 선거 자금의 기본 금액은 일백만 달러($1,000,000)이다.

(2)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유자격 적격 입후보자에 대한 공정 선거 자금의 금액은 공직 적격 입후보자가 받는 기본 금액의 20퍼센트이다.

(b) 총선거에 출마하는 유자격 입후보자의 경우:

(1) 총선거, 특별선거, 또는 특별 결선투표 선거에서 경합하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에 대한 공정 선거 자금의 기본 금액은 일백 삼십만 달러($1,300,000)이다.

(2) 경합 총선거에 출마하는 유자격 적격 입후보자에 대한 공정 선거 자금의 금액은 실적 적격 입후보자가 받는 기본 금액의 25퍼센트이다.

제6절. 공개 요건

제91107조. (a)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참여 입후보자의 총 지출 금액 또는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한 금액이 그 입후보자의 공정 선거 경합자(들)에게 배정된 공정 선거 자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후보자는 총액이 오천 달러($5,000)가 넘는 모든 초과 지출 금액을 지출 또는 약속을 한 시기 중에서 더 이른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또는 전자식으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위원회는 비참여 입후보자가 초과 지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c) 위원회가 초과 지출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초과 지출을 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1095조에 따라 경합하는 실적 적격 입후보자에게 즉시 추가 공정 선거 자금을 제공한다.

제91111조. (a) 이 장이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에 추가하여 제84605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무처장관 입후보자와 관련하여 한 역년 동안 이천오백 달러($2,500) 이상의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하는 위원회(정당 위원회 포함)는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온라인 또는 전자식으로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84204조 (b)항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b)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독립 선거운동 지출에 의해 당선 또는 낙선을 지원하는 입후보자(들)를 기재하고, 그 지출이 독립 지출이라는 것과 그 지출을 입후보자 또는 정당과 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술서가 포함되며, 이 진술서에는 독립 선거운동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서명한다.

(c) 총무처장관에게 이조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a)또는 (b)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실질적인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법에 규정된 다른 배상에 추가하여 독립 선거운동 지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 총무처장관은 (a)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접수와 동시에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는 독립 선거운동 지출이 발생했거나 지출할 의무가 있다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91095조에 따라 추가 공정 선거 자금을 제공한다.

제91113조. 입후보자 또는 그의 위원회가 실시하는 모든 방송 및 인쇄 광고에는 그 입후보자가 광고의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절. 변호, 공직자 및 취임식 자금

제91115조. (a) 제85316조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직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또는 선출된 주 공직자에게 선거운동의 실시, 선거 과정 또는 선출된 주 공직자의 활동 및 직무 수행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1건 이상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입후보자 또는 선출된 주 공직자의 변호를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 수수료와 다른 관련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변호사 수수료와 다른 관련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b) 총무처장관은 이 항과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입법 또는 행정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되는 공직 보유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역년에 이 항에 의해 개설된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오만 달러($50,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 취임식의 일부로, 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 의식, 집회 및 보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임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d)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입후보자 또는 선출된 주 공직자가 (a), (b) 및 (c)항에 기술된 모든 계좌를 합하여 1역년에 한 기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헌금의 최대 금액은 오백 달러($500)이다. 모든 헌금은 현금 또는 현물을 불문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에 대한 기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e)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해당 입후보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 또는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선출된 주 공직자가 제89519조 (b)항 (1)에서 (5)목(포함)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공직을 떠난 후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을 처리해야 한다.

제8절. 입후보자에 대한 제한사항

제91121조. 비참여 입후보자는 선거일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헌금을 받을 수 있으나, 헌금의 금액이 선거로부터 발생한 미상환 순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1123조. 참여 입후보자는 정당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헌금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정당위원회로부터 받은 그러한 헌금의 총액이 해당 선거의 해당 공직에 대한 원래 공정 선거 자금 배정의 5퍼센트 상당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출은 공정 선거 입후보자가 지출하는 자금의 일부로 집계되지 않는다.

제9절. 투표 팜플렛 정견

제91127조. 총무처장관은 참여 입후보자가 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입후보자들을 주 투표 팜플렛과 총무처장관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입후보자 리스트에 명시한다.

제91131조. (a) 참여 입후보자인 총무처장관 입후보자는 주 투표 팜플렛에 25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정견을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견에는 상대방 입후보자를 언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여 입후보자는 주 투표 팜플렛 또는 견본 투표용지에 최대 10명까지의 적절한 추천인 리스트를 게재할 수 있다. 이 정견과 추천인 리스트는 주 투표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는 총무처장관이, 그리고 견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정하는 기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b) 총무처장관직에 출마하는 비참여 입후보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주 투표 팜플렛에 25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정견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비참여 입후보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주 투표 팜플렛 또는 견본 투표용지에 최대 10명까지의 적절한 추천인 리스트를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견에는 상대방 입후보자를 언급해서는 안된다. 이 정견과 추천인 리스트는 주 투표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는 총무처장관이, 그리고 견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정하는 기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비참여 입후보자는 이 항에 의한 투표 팜플렛 정견과 추천인 리스트를 인쇄, 처리, 번역 및 우송하는 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 받는다.

제10절.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지출 승인

제91133조. (a) 마감되지 않는 특별 전용 공정 선거 기금을 주 재무국에 설치한다. 선거법 제20600조에 따라 수령하는 자금은 주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는 경우 예비선거 및 총선거 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참여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공정 선거 기금으로부터 위원회로 이체된다.

(b) 이 법과 관련된 위원회의 행정 및 집행 비용에 충당할 자금은 공정 선거 기금에서 제공하고, 각 4년의 선거 주기에 대해 그 기간 동안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된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91135조. 공정 선거 기금에 예치될 다른 수입원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a) 참여 입후보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적격 헌금과 입후보자 초과 적격 헌금

(b) 참여 입후보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의 초과 착수 자금 헌금

(c) 이 자금에 해당되는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입후보자로 남아있지 않는 참여 입후보자에게 제공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 또는 이 자금에 해당되는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 날짜 이후까지 참여 입후보자가 지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

(d) 공정 선거 기금에 직접 제공된 자발적인 기부금

(e) 주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기타 자금

(f) 공정 선거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

(g) 일반 기금 또는 주의회가 결정하는 기타 자금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기타 수입원

제11절. 행정

제91137조. (a) 특정한 입후보자가 이 법에 규정된 참여 입후보자가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공정 선거 현금카드" 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급하고, 또한 그 입후보자와 스탭들이 모든 선거운동 비용과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그 입후보자가 수령한 공정 선거 자금 금액까지 위원회 계좌로부터 공정 선거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인출 한도" 를 제공한다.

(b) 참여 입후보자 또는 참여 입후보자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 비용을 공정 선거 현금카드가 아닌 현금, 수표, 머니오더, 대출 또는 다른 금융 수단에 의해 지불할 수 없다.

(c) 1일당 일백 달러($100) 이하의 현금 금액을 공정 선거 현금카드에서 인출하여 건당 이십오 달러($25) 이하의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91139조.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에 공정 선거 자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 모든 입후보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유자격 입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을 비례배분하여 감액한다. 위원회가 입후보자에게 공정 선거 자금이 감액될 것이라고 통지하고 그 입후보자가 공정 선거 자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입후보자는 비참여 입후보자가 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공정 선거 자금을 수령했거나 이러한 자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입후보자가 헌금을 모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참여 입후보자에 대해 규정된 헌금 한도 금액까지 모금할 수 있으나,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입후보자가 수령할 자격이 있는 공정 선거 자금 총액에서 차후에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공정 선거 자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 위원회가 차후의 어떤 시점에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사적 자금을 모금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미제공된 자금을 수령한다.

제91140조. 위원회는 총무처장관 선거가 끝난 이후의 1월에 제91085조 (a)항과 제91087조 (b)항에 규정된 착수 자금 한도와 제91099조에 규정된 공정 선거 기금 자금 제공 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과 캘리포니아 주 등록 유권자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 조에 따라 조정한 금액은 착수 자금 한도에 대해서는 일십 달러($10), 공정 선거 자금 금액에 대해서는 일천 달러($1,000)의 근사치에서 반올림한다.

제12절. 집행

제91141조. (a) 참여 입후보자가 제공 받은 공정 선거 자금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이 위원회가 법원 심사에 따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입후보자는 그 초과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정 선거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b) 참여 입후보자가 제공 받은 공정 선거 자금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초과 금액이 위원회가 법원 심사에 따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그 입후보자는 초과 금액 가치의 최대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정 선거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제91143조.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수령한 공정 선거 자금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러한 혜택 또는 공정 선거 자금을 오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91145조. 이 장의 조항들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이 장의 조항들을 위반하게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장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을 교사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91147조.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기소는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시작된다.

제91149조. 이 장에 의해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법원이 선고 시에 특별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지 않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로비스트 또는 주 계약자로 활동하거나, 선출직 주 공직에 입후보해서는 안된다.

제91157조. 이 장은 2019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이 날짜 부로 폐지되나, 차후에,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는 법령에 의해 이 날짜가 삭제 또는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제8.6절(제18798조에서시작)을세입과세법 제2편 10.2부 3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8.6절.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

제18798조. (a) 개인은 납세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18798.1조에 따라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에 기부하도록 소득세 신고서에 지정할 수 있다.

(b) 기부금은 전체 달러 금액이어야 하고, 소득세 합산 신고서의 각 서명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c) (a)항에 의한 기부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해야 하고, 일단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금과 환급금(개인의 계좌와 관련된 다른 환급금 포함)이 개인의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기부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d) 지방조세국은 (a)항에 의해 허용되는 기부금 지정을 할 수 있는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개정한다. 또한 이 양식에는 기부 금액은 일 달러($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부금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적 자금을 모금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총무처장관직에 대한 적격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공적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 지정은 다른 자발적 기부가 삭제되지 않는 한 소득세 신고서에 추가되지 않는다.

(f) (a) 항에 의해 제공하는 기부금은 제10부 3장 6절(제조에서 시작 17201)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는다.

제18798.1조. 제18798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 주 재무국에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을 신설한다. 지방조세국은 납세자가 납세 채무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금액과 제18798조에 따라 납세자가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에 이체하도록 지정한 환급 금액을 모두 회계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회계감사원장은 개인이 제18798조에 따라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에 제공하도록 지정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개인 소득세 기금으로부터 이 기금으로 이체한다.

제18798.2조.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에 이체된 모든 자금은 주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a) 이 절에 의한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조세국과 회계감사원장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지방조세국과 회계감사원장에게 배정

(b) 정부법 제911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정 선거 기금에 배정

제18798.3조. (a) (b)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는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이 처음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된 후 5차 과세연도의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이 날짜 부로 폐지되나, 차후에, 그리고 해당 날짜 이전에 제정되는 법령에 의해 그 날짜가 삭제 또는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b) (1) 지방조세국은 2차 역년의 9월 1일까지, 그리고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이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되는 각 차후 역년의 9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자금이 그 다음 역년을 포함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되는 다음 과세연도 동안 수령해야 하는 최소 기부금 금액을 결정한다.

(B) (A)항에서결정한금액을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한다.

(C) 해당 역년에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금의 금액이 지방조세국이 (A)항에 따라 그 역년에 대해 결정하는 최소 기부금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조세국은 수령한 실제 금액과 그 역년 말까지 수령할 기부금의 추정 금액을 사용하여 해당 역년에 수령할 기부금 금액을 추정한다.

(2) 지방조세국이 해당 역년 동안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금 금액이 그 역년 동안의 최소 기부금 금액보다 적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이 절은 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폐지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한 역년에 대한 최소 기부금 금액은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처음 표시된 후의 2차 역년 동안 이십오만 달러($250,000) 또는 (c)항에 따라 조정된 최소 기부금 금액을 의미한다.

(c) 지방조세국은 유권자 공정 선거 기금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처음 표시된 후의 3차 역년부터 시작되는 각 역년에 대해 (b)항에 명시된 최소 기부금 금액을 9월 1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해당 역년에 대한 최소 추정 기부금 금액은 해당 역년에 대한 최소 추정 기부금 금액에 제17041조 (h)항 (2)목 (A)호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치를 곱한 금액에서 달러의 근사치에서 반올림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해당 역년에 대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치는 제17041조 (h)항 (1)목에 따라 그 역년의 8월 1일 이전에 받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퍼센트 변동 비율 수치에 근거한다.

(d) 이 조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기 전에 이 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부 금액은 폐지 직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이 절에 의해 계속 이체 및 지급된다.

제6조. 1974년 정치개혁법의 입법 개정을 허용하는 정부법 제81012조의 조항들은 2010년 6월 8일에 투표에 회부되는 이 법의 모든 조항에 적용되나, 정부법 제91157조, 세입과세법 제2편 10.2부 3장 8.6절(제18798조에서 시작)은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는 법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8조. 제12장(제91015조에서 시작)을 정부법 제9편에 추가하는 이 법의 조는 개정 1974년 정치개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12장과 상충되지 않는 개정 1974년 정치개혁법의 모든 조항은 그 장의 조항들에 적용된다.

발의안 제16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한 조항을 추가하여 이 헌법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이 주민 발의안은 "납세자 투표권법"이라고 칭한다.

(b) 캘리포니아 주법은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때 유권자 삼분의 이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c)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은 전기 공급 서비스를 시작 또는 확대하거나, 또는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거나, 차입하거나, 공공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가 보증하는 공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다른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위와 같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d) 지방정부들은 종종 주민 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 공급 서비스를 시작 또는 확대하거나, 또는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을 실행한다.

(e) 이러한 시작, 확대 또는 실행 계획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다른 서비스의 건설 또는 획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공 자금, 차입, 공공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가 보증하는 공채의 발행, 또는 다른 부채나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여 지불한다.

(f) 공공 자금, 차입, 부채 및 공채에 의한 자금 조달의 자금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전기 요금과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할증료 또는 세금이다.

(g) 현재 이러한 공공 자금 및 다양한 형태의 차입, 부채 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단지 과반수의 투표를 요구한다.

제2조. 목적 진술

(a) 이 주민 발의안은 지방정부가 전기 공급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신규 지역 또는 신규 고객에게로 확대하거나, 또는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 자금, 공공 부채, 공채 또는 채무, 또는 세금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공공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b) 서비스의 시작 또는 확대를 위해 시설 또는 서비스의 건설 및 획득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공공 자금, 또는 공공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가 지불 또는 보장해야 하는 공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지출, 차입, 채무 또는 부채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 이를 투표에 회부하여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유권자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받고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지역에서 유권자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받아 그러한 지출, 차입, 채무 또는 부채에 대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 자금, 또는 공공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가 지불 또는 보장해야 하는 공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지출, 차입, 채무 또는 부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 이를 투표에 회부하여 관할구역에서 각각 유권자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받아 그러한 지출, 차입, 채무 또는 부채에 대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제3조. 제9.5조를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9.5조. (a)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시설, 공사, 물품,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건설 또는 획득하거나,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 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공채 또는 기타 차입 또는 부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에서의 유권자 삼분의 이의 찬성 투표,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지역(해당되는 경우)에서의 유권자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공채 또는 기타 부채나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공공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 "지방정부"란 지방자치체, 지방자치체 공익사업 지구, 공익사업 지구, 관개지구, 시(헌장 도시 포함), 카운티, 시 겸 카운티, 지구, 특별 지구, 기관, 또는 이러한 조직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공동 전력 공사를 의미한다.

(c) "전기 공급 서비스"란 (1) 소매 최종 사용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전송, (2) 재판매 고객에게 전력을 배전, 또는 소매 최종 사용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배전, 또는 (3) 소매 최종 사용 고객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d) "전기 공급 서비스의 확대"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지방정부의 기존 관할구역 경계 내에서 그 경계 내의 유일한 전기 공급 서비스 제공자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공급 서비스, 또는 (2) 이 조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지방정부로부터 전기 공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계속 전기 공급 서비스를 제공.

(e) "통합 전기 제공자가 되려는 계획"이란 지역사회 선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인가된 지역 공익사업체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매 전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기 공급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을 말한다.

(f) "공공 자금"이란 세금, 자금, 현금, 수입, 자본, 자산, 공채 수입금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또는 차입, 또는 공공요금 납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공공 자금"에는 연방 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g) "공채 또는 기타 부채나 채무"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입, 공채, 어음, 보증 또는 기타 부채 또는 채무, 또는 세금, 현금, 수입, 자본, 자산, 공공요금 납부자의 분담금, 지방정부 출납국, 또는 기타 자금원으로부터 지출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해 부채 또는 채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h)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공채 또는 기타 부채나 채무 또는 공공 자금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이 조가 제정되기 전에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및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해당되는 경우) 내에 있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경우, 또는 (2) 바이오매스, 태양열, 광전지, 풍력, 지열, 재생 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3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수력발전, 소화가스, 지방자치체 고체 폐기물 전환, 매립가스, 해양파, 해양열, 또는 조력으로부터 생산되는 재생 가능 전기의 구입, 제공, 또는 공급, 또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최종 사용을 위한 전기 공급 서비스(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기 공급 서비스 제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상충되는 법안

A. 이 주민발의안은 종합적인 법안으로 의도되었다. 이 주민발의안,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된 다른 주민발의안이 같은 주 전체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경우, 다른 주민발의안(들)의 조항들은 이 주민발의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주민의 의향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이 주민발의안의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주민발의안(들)의 모든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B. 이 주민발의안이 법률 또는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되는 투표 주민발의안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이러한 상충되는 법률 또는 투표 주민발의안이 차후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주민발의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법률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가분성

이 주민발의안의 조항들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주민발의안의 어떤 조항이나 그의 적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된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들은 그러한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의안 제17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보험법에 한 조항을 개정하고 한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안은 계속 가입 자동차보험 할인법(Continuous Coverage Auto Insurance Discount Act)이라고 칭한다.

제2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험 요율을 규제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결정한다.

(b)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들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속 같은 보험회사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나, 신규 고객에게는 이러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운전자들도 보험회사를 변경하면 계속 가입 할인을 받을 수 없다.

(c) 이 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시정하고, 자동차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이러한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d)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주로 안전 운전 기록, 연간 운전 마일 수 및 운전 경험에 기준하여 요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조항들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단지 모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온 신규 신청자에게 계속 가입 할인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e)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입 할인을 확대하면 운전자들이 더 많은 옵션과 선택을 제공 받고, 경쟁이 증가하고, 책임있게 보험에 가입한 모든 운전자의 요율이 인하될 것이다.

(f) 대다수의 주들은 보험회사가 계속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안은 단지 캘리포니아 주의 관행을 텍사스, 뉴욕, 오레곤, 워싱턴, 플로리다와 같은 다른 주들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3조.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4조. 제1861.024조를 보험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861.024조. (a) 제1861.02조 (c)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허용 또는 요구되는 할인에 추가하여, 보험회사는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계열사 여부에 상관없이)를 통해서 신체상해책임보험에 계속 가입한 기간에 기준하여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1861.02조 (a)항이 적용되는 보험에 대해 각 보험의 혜택 범위에 해당되는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발효일 또는 갱신일 이전에 계속 가입한 햇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할인은 계속성 할인이라고 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계속성 할인에 대한 부모의 자격에 기준하여 같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b)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861.02조 (a)항이 적용되는 보험에 대해 제2편 3부 1장 5.5절(제11629.7조에서 시작)에 의한 저가 자동차보험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증빙, 제2편 3부 1장 4절(제11620조에서 시작)에 의한 불량 위험 할당 플랜 가입에 대한 증빙, 이전 보험회사(들)이 제공한 가입에 대한 증빙,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가입의 계속성을 증명할 수 있다. 가입에 대한 증빙에는 이전 보험회사(들)이 발행한 보험증권, 청구서 또는 가입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의 사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등이 있다.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입이 실효되었거나, 또는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이 보험료 미납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지난 5년 간 최대 90일 동안 실효되었더라도 계속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실효에 대해 추가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 보험법 제1861.0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660조 (a)항에 기술된 자동차보험에 대한 요율 및 보험료는 다음의 요소를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피보험자의 안전 운전 기록

(2) 피보험자가 매년 운전하는 마일 수

(3) 피보험자가 운전한 햇수

(4) 보험국장이 규정에 따라 채택할 수 있고 손실 위험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요소들. 이 규정에는 자동차 요율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각 요소에 적용되는 각 가중치가 기술되어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한다.

(b) (1) 제1861.025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 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2)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에 대해 부과되는 요율은 (a)항을 준수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부과 받는 요율보다 최소한 20% 가 낮아야 한다.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의 요율은 이 절에 의해 승인된다.

(3) (A) 이 항은 제2편 5부 2장(제12160조에서 시작)에 의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 신청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자동차 클럽에 의해 1988년 11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교환 보험회사가 이 항에 기술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자동차 클럽에 대한 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 이 항은 프랜차이즈 그룹을 포함하는 회원 그룹에 대해 또는 이 그룹을 통해서 제공되는 보험 신청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1988년 11월 8일 이전에 설립된 지정된 자발적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보험회사가 그룹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단 그 보험회사나 계열회사가 이러한 회원 그룹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험을 제공 및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C) 그러나, (A) 및 (B)호에 의해 허가된 보험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

(i) 자동차 클럽에 대한 회원 자격(결정하는 경우)은 회비의 적시 납부, 그리고 운전 기록 또는 보험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선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 단 자동차 클럽에 대한 회원 자격은 주 내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기준해서는 안된다.

(ii) 회비는 단지 회원 자격과 회원 혜택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자격과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하고 제공 받는 혜택과 정당한 관계를 갖는다. 회비 금액은 회원이 회원 단체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회비 또는 그 일부분은 회원 단체에 의해 보험회사, 또는 그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대리인, 자회사, 지주회사로 이체되지 않으나, 단 이 조항은 회원 단체와 이러한 사업체 사이의 선의의 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

(iii) 회원 자격이 있으면 보험을 신청할 권리에 추가하여 선의의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각 회원 자격 등급 내에 있는 모든 회원에게 적절하게 제공된다.

(i), (ii) 또는 (iii) 항목을 위반하는 보험회사는 제1861.14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c) 전에 자동차보험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는 자동으로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요율, 보험료 또는 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a)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계열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지속성은 선택적인 평가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회는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보험료를 경쟁력있게 책정하기 위한 발의안 제103호의 목적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주의회는 피보험자가 전에 할인을 제공하는 특정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상관없이 이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정상 가격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할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선언한다. 보험 가입의 지속성은 제2편 3부 1장 5.5절(제11629.7조에서 시작) 및 5.6절(제11629.9조에서 시작)에 의한 저가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또는 제2편 3부 1장 4절(제11620조에서 시작)에 의한 불량 위험 할당 플랜 가입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이 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최대 2년 간의 가입이 실효되고, 또한 기타 이유로 지난 5년 간 최대 90일 동안 실효되었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d) 보험회사는 기명된 모든 피보험자가 이전 3년 동안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에 대해 우량 운전자 할인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e) 이 조는 1989년 11월 8일에 발효된다. 보험국장은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보험회사는 이 절에 따라 그 날짜 이전의 규정을 준수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단 그러한 신청서는 그 날짜 이전에 승인되지 않는다.

제6조. 상충되는 투표 법안

이 법안과 가입의 계속성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같은 주 전체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경우, 다른 법안들의 조항들은 이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법안(들)의 모든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제7조. 개정

이 법의 조항들은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가 동의하여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령에 의해 그 목적을 촉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에 의해 개정되지 않는다.

제8조. 가분성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의 적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된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들은 그러한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향이다.

유권자의 권리

1. 유효한 등록 유권자는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란 이 주의 주민이고,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니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2.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투표소에 와서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재(우편) 투표자들도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를 폐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반납하면 새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권자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작성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카운티의 모든 선거구로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 제작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주민이 있는 경우, 선거 자료를 다른 언어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선거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거나,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관을 소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원회나 선거 관리 담당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10. 유권자는 불법 또는 사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 담당관이나 총무처장관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선거 사기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 주십시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하여 투표소의 위치와 투표용지에 기재될 쟁점 및 입후보자 같은 투표 과정에 대한 공식 정보를 유권자에게 보냅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와 관련된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번호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의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를 악용한다고 의심되어 신고하기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특정한 유권자들은 비밀 유권자 신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총무처장관의 Safe at Home (가정 안전)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NONPROFIT
U.S. POSTAGE
PAID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IAL ELECTION MAIL
Authorized by the U.S. Postal Service ®

캘리포니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

www.voterguide.sos.ca.gov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잊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2010년 6월 8일 화요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 최종일.

다음의 언어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의 선거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English:	(800) 345-VOTE (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日本語 **/Japanese:**	(800) 339-2865
Việt ngữ **/Vietnamese:**	(800) 339-8163
Tagalog:	(800) 339-2957
中文**/Chinese:**	(800) 339-2857
한국어**/Korean:**	(866) 575-1558
TDD:	(800) 833-8683

주정부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이 안내서를 한 부만 우편으로 보냅니다.

OSP 10 117501